

학사규정

학칙

학사운영규정

학생규정

I. 학 칙

1. 학 칙

체정 : 1982. 3. 1

개정 : 1983. 12. 29, 1985. 3. 1, 1986. 3. 1, 1987. 3. 1, 1987. 9. 1, 1988. 3. 1, 1991. 9. 1, 1992. 3. 1, 1993. 3. 31, 1993. 8. 12, 1994. 7. 6, 1996. 1. 12, 1996. 7. 16, 1997. 3. 1, 1998. 3. 1, 1998. 6. 16, 1999. 3. 1, 1999. 8. 3, 2000. 3. 1, 2001. 2. 1, 2001. 7. 26, 2001. 9. 6, 2002. 2. 1, 2002. 3. 1, 2003. 3. 1, 2003. 9. 1, 2003. 12. 22, 2004. 4. 20, 2004. 6. 23, 2005. 3. 24, 2005. 6. 28, 2005. 8. 12, 2005. 11. 8, 2006. 3. 14, 2006. 8. 1, 2006. 11. 14, 2007. 9. 1, 2008. 1. 30, 2008. 4. 1, 2008. 8. 6, 2009. 1. 1, 2009. 5. 6, 2009. 8. 5, 2010. 2. 17, 2010. 7. 1, 2010. 12. 28, 2011. 4. 29, 2011. 6. 30, 2011. 9. 1, 2012. 2. 22, 2012. 7. 19, 2012. 9. 13, 2013. 2. 28, 2013. 5. 24, 2013. 6. 26, 2013. 8. 27, 2013. 9. 25, 2013. 12. 24, 2014. 2. 27, 2014. 6. 19, 2014. 10. 28, 2015. 1. 1, 2015. 5. 15, 2015. 10. 1, 2016. 3. 30, 2016. 8.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기독교정신과 민주이념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지식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국제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3.)

제1조의2(인재상 및 노마드 핵심역량) ① 이 대학교의 인재상은 다언어·다문화 기반 글로벌 융복합 창의 인재로 한다.

②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도전(N), 융합(O), 혁신(M), 나눔(A), 확장(D)으로 하며, 각 영역에 세부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노마드(NOMAD) 핵심역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8. 30]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유럽미주대학, 아시아대학, 인문사회대학, 상경대학, 이공대학, 글로벌창업융합대학, 만오교양대학, 교직과와 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산업대학원, 통합의학대학원 및 글로벌골프대학원을 두며,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 2009.1.1, 2009.5.6., 2010.2.17, 2012.7. 19, 2013.5.24, 2014.6.19, 2015. 1.1, 2016. 8. 30)

② 이 대학교의 각 대학 및 모집단위별 그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세부전공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9, 2013.5.24, 2015.1.1.)

제2조의2(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2와 같다.

④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27.][전문개정 2014.6.19.]

제2장 부속시설

제3조(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부속기관 등을 둔다. (개정 2007.9.1, 2013.2.28, 2015.1.1, 2016. 8. 30)

② 부속기관에는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외성생활관, 체육부, 언론사,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만오교육문화연구원,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개정 2008.4.1, 2012.2.22, 2013.2.28, 2013.6.26, 2014.2.27, 2015.1.1, 2016. 8. 30)

③ 교육연수원에는 영어교육교사연수센터를 두

며,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에는 외국어연구소, 다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국제통상연구소, 아시아공동체연구소,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 인도언어문화연구소, 동남아시아역원, 지중해지역원, 중남미지역원을 둔다.(개정 2008.4.1, 2009.5.6, 2010.2.17, 2012.2.22, 2013.2.28, 2013.6.26, 2014.2.27, 2015.1.1, 2016. 8. 30)

④ 부속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 8. 30)

제3조의2 삭제<2007.9.1.>

제3조의3(중앙도서관) 부속시설 중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중앙도서관의 발전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 이용, 도서관운영위원회, 그 밖의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이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학·석사연계과정의 학사과정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학점취득 특별시험, 학점초과취득, 계절학기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학기 내지 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② 이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하되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후 이 대학교 수업연한의 2배로 하며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이 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 2012.2.22.)

③ 학업의 수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학생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1년간 재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9.1.)

제4장 학년·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③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에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업일수 및 교원의 교수시간)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국정공휴일

②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8조(입학시기) 입학의 허가 시기는 매학기초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이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

3.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10조(편입학) ① 이 대학교의 제3학년 매학기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 매학기 초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입학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이하여야 하고 또한 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이 대학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제3학년에 정원의외로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계

교육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9.13.)

제11조(재입학) ① 이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2.)

② 삭제<2012.2.22.>

③ 재입학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입학지원서류) ① 이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이 대학에서 정한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항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수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입학시험) ① 신입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대학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 등 입학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전형하되, 면접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병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체육 · 문학 · 어학 · 수학 · 과학특기자의 입학은 특기실적 및 제1항을 병과하여 사정할 수 있다.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 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14조(입학허가) 입학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5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삭제)

제6장 등록

제17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이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 ①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은 해당 기간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2.)

제7장 전 부(전 과)

제19조(시기 및 방법) ① 전부(과)는 제2학년 매학기 또는 3학년 개시 30일 이전에 실시하며,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단, 특기자전형 입학자 및 편입학한 자는 전부(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② 삭제<2012.2.22.>

③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절차) (삭제)

제21조(과목이수) (삭제)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2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 를 필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온라인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23조(휴학기간) 삭제 <2012.2.22.>

제24조(병역휴학) 삭제 <2012.2.22.>

제25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

- 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필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2.22.)
- 제2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하고 보호자에게 제적 통보를 한다.
1.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로서 다음 등록 기간 내에 등록 및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2.2.22.>
 3. 삭제 <2012.2.22.>
 4. 삭제 <2012.2.22.>
 5. 삭제 <2012.2.22.>
 6.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징계 받아 제적된 자(개정 2012.2.22.)

제9장 교과 및 이수

- 제28조(교육과정) ①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 2013.2.28, 2015.5.15.)
- ②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에 한하여 교직과목을 둔다.
- ③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9.1, 2010.2.17, 2015.5.15.)
- ④ 삭제 <2007.9.1.>
- ⑤ 삭제 <2007.9.1.>
- ⑥ 삭제 <2008.1.30.>
- ⑦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등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30조(선수과목의 이수) (삭제)
- 제31조(부전공) ① 부전공은 제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13.2.28.)
-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2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은 제2학년부터 신청

-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2조의2(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은 제2학년 1학기부터 제3학년 2학기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2조의3(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 ①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GLE)을 설치하여 제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2조의4(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 ①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ILE)을 설치하여 제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11.8.)
- ②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8.)
- 제32조의5(실무외국어인력 양성과정) 삭제 <2010.2.17.>
- 제32조의6(한국어전문가 양성과정) 삭제 <2008.1.30.>
- 제32조의7(학·석사통합과정)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2.22.]
- 제32조의8(외국인편입생 합작학과) 외국인편입생을 위하여 합작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2.28.]
- 제32조의9(학·석사연계과정)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0.28.]
- 제32조의10(융합전공) ① 기존 학부, 학과 또는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32조의11(자기설계복수전공) ①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 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자기설계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33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 수업 또는 현장실습 수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교과목번호) 교과목번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6조(출석평가)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결석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개정 2015.1.1.)

제37조(종합시험) (삭 제)

제38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실 점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90 ~ 94	A	4.0
85 ~ 89	B+	3.5
80 ~ 84	B	3.0
75 ~ 79	C+	2.5
70 ~ 74	C	2.0
65 ~ 69	D+	1.5
60 ~ 64	D	1.0
0 ~ 59	F	0.0

③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D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급 및 NP를 낙제로 한다. (개정 2011.4.29.)

④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9.1.)

제39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게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28.)

제40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이수학점) ① 매학기 취득학점은 17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19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9.5.6.)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8.6, 2010.2.17.)

③ 삭제<2010.2.17.>

④ 삭제<2010.2.17.>

제42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학년 : 33학점 이상
2. 제2학년 : 65학점 이상
3. 제3학년 : 98학점 이상
4. 제4학년 : 130학점 이상

(개정 2009.5.6.)

제43조(특별시험) ① 학생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특별시험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본인에게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2.)

제45조(학사제적) 삭제<2012.2.22.>

제46조(학점 인정) ① 전부(과), 편입학, 재입학, 및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심사하여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고 정해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1학년에 한하여 국내 타 대학과의 소정의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프로그램 이수 및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특별강좌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④ 방학 중 재학생이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7.9.1.)

⑤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또는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7.9.1.)

제47조(졸업시험) ① 졸업예정자는 영어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②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과)에 대하여는 실험실습 보고서나 실기발표 또는 공인된 기관의 전공 관련 어학시험 및 자격증 등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2.17.)

③ 영어졸업인증자격 및 전공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2.17.)

제48조(졸업과 학위) 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7조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별표3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2.22, 2012.7.19, 2013.8.27.(별표2 개정), 2015.5.15.)

②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5.15.)

제48조의2(복수학위) ① 국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3(졸업유보)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개

정 2010.2.17.)

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이수
2. 교직과정 이수
3. 복수전공 과정 이수

제49조(조기졸업) ① 6학기 등록을 필한자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7조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②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졸업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조기 졸업자도 전기 또는 후기로 졸업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51조(총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 탐구 및 창조적 지성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자치활동의 범위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 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4. 기타 학생자치활동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자
2. 4-6학기(부득이한 경우 7학기) 등록한 자
3. 유기 정학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형사처벌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⑥ 학생회의 임원의 범위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대의원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개정 2016.8.30.)

제52조(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학생단체의 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학생지도) ① 학장은 매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학생자치 활동을 지도·육성하고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등에서 주관하는 제반 학생활동이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한다.

제55조(금지활동) 학생은 학업과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5.11.8.)

제56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57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직접징계) 총장은 학생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자의 재입학 금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60조(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학칙 제55조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8.)

1~8. 삭제<2005.11.8.>

② 학생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2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제63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8.]

제64조(실습비) 실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실비로 징수한다.

제65조(등록금의 징수시기) (삭제)

제66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을 매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67조(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제13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68조(위탁생) 대학학생정원령의 규정에 의거한 정부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 학생으로 소정의 전형과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제69조(위탁생의 제명) 위탁생의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7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할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71조(외국인 학생의 과정이수) ① 외국인 특별학생을 위한 과정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각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2조(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학생으로 편입학시킬 수 있다.

제73조(학칙의 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13장의 2 시간제 학생등록

제73조의 2(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73조의 3(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3조의 4(취득기준학점) 시간제 등록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73조의 5(선발방법 등) 시간제 등록학생의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공개강좌

제74조(공개강좌 개설) 직무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75조(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 제

제76조(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16장 교수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장명변경 2013.12.24.)

제77조(교수회 설치) ① 이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한다.

제78조(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9.13.)

제79조(교수회 소집)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 재적 1/4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총장 또는 학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80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권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1조(교수회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법인성지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5조의3 내지 제35조의7에 의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17장 교무위원회

제82조(교무위원회 설치) 이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83조(교무위원회 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처장, 각 실장, 각 대학원

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30, 2013.2.28, 2014.6.19.)

② 필요시 총장은 일반 교원 중에서 추가로 교무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84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5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이 대학교 제반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과,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업,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장 학교기업 및 현장연수

제86조(학교기업 설치)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학교 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8.6.)

② 학교기업은 대학교 교지 내(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설치한다.

③ 삭제<2008.8.6.>

제87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 실습에 대하여 총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9.1.1.)

②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8. 30.)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8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의 1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

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89조(산학협력관련 현장연수) 이 대학교에서 인정한 대학생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의해 일정기준 이상의 현장연수를 수행하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87조를 준용한다.

제19장 교원 재임용

제90조(재임용) 이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3.24.)

제20장 학생군사교육단(신설 2008.8.6.)

제91조(설치목적) 이 대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군사교육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예 초급 장교를 육성하고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08.8.6.](개정 2013.6.26.)

제92조(구성) ① 학군사관후보생의 모집정원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당해 년도 할당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8. 30.)

②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정원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학은 학군단에 직원을 둔다.(개정 2016. 8. 30.)

[본조신설 2008.8.6.]

제93조(임무) 학군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교내교육(군사학), 훈육 지도
2. 방학기간 중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후 입영 훈련 실시(개정 2016. 8. 30.)
3. 대학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4. 전시 대학총장 군사자문 역할

[본조신설 2008.8.6.]

제94조(교육과정) ① 학군사관 후보생 훈련 및 교육은 기초군사 및 동·하계 입영훈련, 교내교육으로

구분되며, 대상, 시기, 기간, 방법 등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 8. 30.)

② 입영훈련은 동계 2주, 하계 4주를 실시하며 예비 후보생(2학년)의 경우 입단 전 기초군사훈련(2주)을 실시한다.(개정 2016. 8. 30.)

③ 교내교육은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군사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1,2학기로 나누어 주 단위 4시간을 편성하며, 대학은 학기별 2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16. 8. 30.)

[본조신설 2008.8.6.]

제95조(기타) 그 밖에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개정 2016. 8. 30.)

[본조신설 2008.8.6.]

제21장 자체평가(신설 2009.8.5.)

제96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2장 학칙개정절차(신설 2008.8.6.)

제97조(제안)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은 개정안을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3.]

제98조(예고) ① 개정안을 제출 받은 학칙개정 주관 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고를 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2.9.13.]

제99조(의견제출) 각 부서장은 예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3.]

제100조(심의·승인·시행)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고, 법인의 승인을 얻어 확정·시행한다.

[본조신설 2012.9.13.](조명변경 및 개정 2013.12.24.)

부 칙

-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통령령 12237호(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자는 학칙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82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에 관한 졸업정원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사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학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학사 제적조항중 학사경고 횟수는 본 개정학칙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문학과, 전산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서 각 학과명칭이 변경된 인문사회대학 국어국문학과와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와 각각 재적학생으로 본다.
- ③(학사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45조 제2호의 경우는 1991년 9월 1일 이후 산정한 평점평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선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1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인문사회대학 경영정보학과에 입학한 자는 그 소속을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동양어대학 인도어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양어대학 남아시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과, 노어과, 남아시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외교학과, 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서 각각 학부(과) 명칭이 변경된 영어학부, 러시아어과, 인도어과, 중앙아시아어과, 외교학부, 경영학부의 각각 재적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영어능력시험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

내지 제49조의 졸업시험 중 영어능력시험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 철학과(야)로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은 철학과(주) 재적학생으로 본다. 단, 철학과(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철학과, 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문화학과, 역사학과에 각각 재적 학생으로 본다.
- ③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상경대학, 이공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상경대학의

- 1) 경영학부, 국제회계경제학부(회계학전공), 무역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학전공), 경영정보학과(야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과)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부에,
- 2) 무역경영정보학부(무역학전공), 국제회계경제학부(경제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국제통상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공대학의

- 1)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2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정보과학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에, 2003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정보과학대학 컴퓨터전자공학부에,
- 2) 정보수리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정보과학대학 정보수리과학부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정보과학대학 정보경영과학부에,
- 3)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정보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레저·스

포츠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 중 재적하고 있던 학부가 2개 이상의 모집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이태리어과, 외교학부, 전자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이탈리아어과, 외교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역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4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역사학과에,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역사관광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전자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200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컴퓨터전자공학부에,
- 2)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분리된 2개 학부(컴퓨터공학부, 디지털정보공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전공(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인문계열 재적생은 분리된 국어국문·언어계열 또는 문화·역사관광계열 중 본인이 선택한 계열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에, 2007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멀티미디어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컴퓨터공학과(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컴퓨터공학부나, 야간학부(과)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포르투갈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문화학과, 영어학부(야), 국어국문학과(야), 법학부(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포르투갈(브라질)어과,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영상문화학부, 영어과(야), 한국어문학과(야), 법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어국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한국어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언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부(경영전공, 회계전공, e-비즈니스 경영정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마.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부(야)(경영전공, 회계전공, e-비즈니스 경영정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학부(국제무역전공, 국제경제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국제통상학과, 비즈니스경제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사.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경영과학부(정보시스템전공, 정보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 정보수학과, 정보통계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시스템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과학대학(주) 또는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과(야)에 재적

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컴퓨터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컴퓨터공학부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과학대학(주) 또는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멀티미디어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디지털정보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디지털정보공학부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과학대학(주) 또는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④ (전공 미배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국어국문·언어계열 재적생은 한국어문학부 또는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문화·역사관광계열 재적생은 영상문화학부 또는 역사관광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경영학부 재적생은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국제통상학부 재적생은 국제통상학과, 비즈니스경제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마.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정보경영과학부 재적생은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 정보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경영학부(야) 재적생은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과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학칙인 취득학점 18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1학점(법학부 23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③ (졸업 및 수료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학칙인 졸업학점 140학점(법학부 150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제1학년 : 35학점(법학부 38학점) 이상

제2학년 : 70학점(법학부 76학점) 이상

제3학년 : 105학점(법학부 114학점) 이상

제4학년 : 140학점(법학부 150학점)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④ (학사경고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인 3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⑤ (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언어학과,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영어학부 언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변경학칙 제2조 제1항 및 모집단위 변경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학부(통역번역전공, 영미문학전공, 언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적중인 학생 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영어학부(관

광·컨벤션영어전공,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전공, 영미문학·문화컨텐츠전공, 영어·IT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영상문화학부, 국제비서학부, 정보수학과, 경영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영상미디어학과, 국제비서학과, 정보수리학과, e-비즈니스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이전에 법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법·경찰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이전에 디지털정보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디지털미디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마. 이 학칙 시행이전에 정보통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응용통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바.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e-비즈니스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e-비즈니스학과에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사. 이 학칙 시행이전에 영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영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아.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일본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일본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자. 이 학칙 시행이전에 중국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중국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불어과(야), 독일어과(야), 러시아어과(야), 한국

어문학과(야), 법학과(야),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불어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 한국어문학부, 법·경찰학부,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e-비즈니스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해당 학부(과)가 주간에 없는 경우나 주간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나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32조의4는 이 학칙 시행 이전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32조의5는 이 학칙 시행 이전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32조의6은 이 학칙 시행 이전 200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11조의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모집중단에 따른 재입학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불어과(야), 독일어과(야), 러시아어과(야), 한국어문학과(야), 법학과(야),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의 재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학부(과) 주간 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일본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일본어학부에,
 - 2)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분리된 2개학부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본어학부(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응용통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데이터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마.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회계·세무행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49조(조기졸업)의 경우는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국제무역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제46조 제4항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2항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3조 제3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 8. 6.)

- ① (시행일)이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회계·세무행정학부(회계전공, 세무행정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회계·세무행정학부(회계·금융관리전공, 세무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비즈니스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경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부(컴퓨터응용전공, 소프트웨어개발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1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에, 2012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컴퓨터공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레저·스포츠학부(사회체육전공, 골프지도전공, 레저·스포츠경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체육학부(생활체육지도전공, 골프전공, 스포츠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1. 1.)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현장실습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에 의한 학점인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현장실습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5. 6.)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

전 법·경찰학부 입학자의 최대이수학점은 21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12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③(수료요건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가. 2008학년도 이전 법·경찰학부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적변동에 의하여 2012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의 수료학점은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종전의 부칙(2005.6.28.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8. 5.)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17.)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47조에 의한 졸업 시험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0. 7. 1.)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앙아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터키·중앙아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12. 28.)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4. 29.)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6. 30.)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5일부터 부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9.1.)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개정된 학칙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2.2.22.)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7.19.)

-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생제적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영어학부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분리된 2개 학부(영어학부, 영어통번역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불어과, 임베디드IT학과, 데이터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프랑수어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경영·금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 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해당학부(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수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

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데이터경영·금융학부 또는 디지털미디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해당학부(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③(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재입학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학부의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분리된 2개 학부(영어학부, 영어통번역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수리학과와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데이터경영·금융학부 또는 디지털미디어학부 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부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2.9.13.)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변경 학칙의 적용은 2012년 7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개정 2013. 2. 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5.2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6. 2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8. 2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9.25.)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학부, 영어학부(야), 영어통번역학부, 러시아어과,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 중국어학부, 중국어학부(야), 중국지역통상학과, 러시아·인도통상학부, 터키·중앙아시아어과, 인도어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행정학부,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은 2013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 존속한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학부, 영어학부(야), 영어통번역학부, 러시아어과,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 중국어학부(야), 중국지역통상학과, 터키·중앙아시아어과, 인도어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행정학부,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재입학)하는 학생은 영어과, 영어과(야), 영어통번역과,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어전공),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야), 중국학부(야), 중국학부(중국지역통상전공),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인도학부(인도어전공), 경영학과, 회계세무행정학과, 재활복지학과, 사회체육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중국어학부와 러시아·인도 통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재입학)하는 학생은 중국어학부는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 또는 중국학부(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러시아·인도통상학부는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지역통상전공) 또는 인도학부(인도지역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3.12.2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설치학년도) 계약학과는 2015학년도 부터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개정 2014.6.1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과, 영어통번역과, 영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영어학부(영어전공), 영어학부(영어통번역전공), 영어학부(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독일어과, EU지역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유럽학부(독일어전공), 유럽학부(EU지역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프랑스어과, 이탈리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프랑

스·이탈리아학부(프랑스어전공), 프랑스·이탈리아학부(이탈리아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스페인어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중남미학부(스페인어전공), 중남미학부(포르투갈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일본어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비즈니스일본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일본어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일본어창의융합학부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타 야간학부(과)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태국어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동남아시아학부(태국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베트남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미얀마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8.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한국어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한국어문화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9.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과, 회계세무행정학과, e-비즈니스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영학부(경영전공), 경영학부(회계전공),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0.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무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국제무역유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비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국제비서·세무학부(국제비서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제데이터금융학부(경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데이터경영·금융학부(데이터경영전공), 데이터경영·금융학부(금융보험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제데이터금융학부(데이터경영전공), 경제데이터금융학부(금융보험수리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 디지털미디어학부(인터넷미디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디지털미디어공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 디지털미디어공학부(인터넷미디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학부(정보보안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정보보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6.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디지털미디어학부 재적생은 정보보호학과 또는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파이데이터창의인재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10.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러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7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언어통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러시아·인도통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7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언어통상전공) 또는 인도학부(인도지역통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학부(정보보안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신설된 정보보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동남아시아학부(태국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베트남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미얀마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동남아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언어처리창의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동남아창의융합학부(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역사관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

- 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역사관광·외교학부(역사관광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외교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역사관광·외교학부(외교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활복지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복지재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학칙 시행 이전에 G2융합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8.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9.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상미디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영상언론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설계복수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32조의11(자기설계복수전공)의 경우는 2015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부칙(2014.6.19. 시행)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회계·세무행정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영학부(경영전공),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회계전공) 또는 국제비서·세무학부(세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부칙(2015.10.1. 시행)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동남아시아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동남아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부칙(2015.10.1. 시행) 제2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G2비즈니스융합학부 또는 중국학부(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중국지역통상전공) 중 본인에 선택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6. 8. 3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인문사회	유럽미주대학	영어학부	100		영어전공	50		
					영어통번역전공	50		
		영어학부(야)		30				
		유럽학부	65		독일어전공	32		
					EU지역통상전공	33		
		프랑스·이탈리아학부	65		프랑스어전공	32		
					이탈리아어전공	33		
		중남미학부	100		스페인어전공	6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100		러시아어통상전공	6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소계	430	30				
	공학	아시아대학	일본어창의융합학부	130		-		
			중국학부	7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30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중국학부(야)				30				
동남아창의융합학부			160		-			
					*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	(10)		
인문사회	인문사회대학	인도학부	55		인도어전공	30		
					인도지역통상전공	25		
		아랍어과	35					
		소계	450	30				
		인문사회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화학부	60		-	
				법·경찰학부	60		법학전공	25
					경찰행정전공	35		
역사관광·외교학부	70				역사관광전공	35		
					외교전공	35		
사회복지재활학과	30							
인문사회	상경대학	경영학부	110		경영전공	65		
					회계전공	45		
		국제무역유통학부	70		국제무역전공	40		
					유통물류전공	30		
		국제비서·세무학부	65		국제비서전공	40		
					세무전공	25		
		경제데이터금융학부	90		경제학전공	37		
			데이터경영전공	28				
			금융보험수리전공	25				
	소계	335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공학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50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정보보호학과	30			
		디지털미디어공학부	60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예체능	이공대학	사회체육학부	7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생활체육지도전공	30
					골프전공	20
					축구매니지먼트전공	20
		소계	250			
인문사회	글로벌창의융합대학	파이데이터창의인재학과	25			
		G2비즈니스융합학부	85			
		영상언론융합학과	35			
		소계	145			
총 계			1,830	60		

*계약학과(10)는 정원의 모집

2015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개정 2016. 8. 30.)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인문사회	유럽미주대학	영어학부	100		영어전공	50	
					영어통번역전공	50	
		영어학부(야)		30			
		유럽학부	70		독일어전공	35	
					EU지역통상전공	35	
		프랑스·이탈리아학부	70		프랑스어전공	35	
					이탈리아어전공	35	
		중남미학부	100		스페인어전공	6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100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소계	440	30				
	아시아대학	일본어창의융합학부	130			-	
		중국학부	100		중국어언어문화콘텐츠전공	3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30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중국학부(야)		30		태국어전공	40
		동남아시아학부	16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전공	40	
					베트남어전공	40	
					미얀마어전공	40	
	인도학부	55			인도어전공	30	
				인도지역통상전공	25		
	아랍어과	40					
	소계	485	30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화학부	60			-	
		영상미디어학과	40				
		역사관광학과	40				
		법·경찰학부	70		법학전공	35	
경찰행정전공					35		
외교학과		40					
소계	250						
상경대학	경영학부	150		경영전공	65		
				회계전공	50		
				e-비즈니스전공	35		
	국제무역유통학부	70		국제무역전공	40		
				유통물류전공	30		
	국제비서·세무학부	75		국제비서전공	45		
				세무전공	30		
경제데이터금융학부	95		경제학전공	40			
			데이터경영전공	30			
소계	390			금융보험수리전공	25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공학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50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정보보호학과	30			
인문사회		디지털미디어공학부	60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예체능		재활복지학과	40			
		사회체육학부	80		생활체육지도전공	40
	골프전공				20	
축구매니지먼트전공	20					
	소계	300				
인문사회	글로벌창의융합대학	G2융합커뮤니케이션학과	25			
공학		파이데이터창의인재학과	25			
		*언어처리창의융합학과	(10)			
-	-	소계	50			
총 계			1,915	60		

*계약학과(10)는 정원의 모집

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계열	대 학	학부/계열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명)		전공배정정원(명)	
				주	야	전공명	정원
인문사회	유럽미주 대학	영어계열	영어과	70			
			영어과(야)		30		
			영어통번역과	70			
		유럽계열	프랑스어과	35			
			독일어과	40			
			이탈리아어과	35			
			EU지역통상학과	40			
		중남미계열	스페인어과	6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40			
		러시아·중양아시아학부	러시아·중양아시아학부		100		러시아어전공
						러시아지역통상전공	25
						터키·중양아시아어전공	35
			소 계	490	30		
	아시아 대학	일본어계열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65			
			비즈니스일본어과	65			
			비즈니스일본어과(야)		30		
		중국학부	중국학부	130		중국언어문화컨텐츠전공	40
			중국학부(야)		3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40
		동남아시아계열	태국어과	40		중국지역통상전공	5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40			
			베트남어과	40			
		아랍·인도계열	미얀마어과	40			
			아랍어과	40			
	아랍·인도계열	인도학부		60		인도어전공	35
						인도지역통상전공	25
			소 계	520	60		
	인문사회 대학	인문계열	한국어문학부	60		한국어문학전공	30
			영상미디어학과	40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30
			역사관광학과	40			
		사회계열	법·경찰학부	80		법학전공	40
외교학과			40		경찰행정전공	40	
		소 계	260				
상경대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90				
		국제무역학과	55				
		회계세무행정학과	75				
		e-비즈니스학과	40				
		국제비서학과	50				
	경제학과	40					
	경제금융계열	데이터경영·금융학부		55		데이터경영전공	30
					금융보험수리전공	25	
		소 계	405				

계열	대 학	학부/계열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명)		전공배정정원(명)	
				주	야	전공명	정원
공학	이공대학	IT계열	컴퓨터공학과	45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디지털미디어학부	80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문사회		스포츠복지계열	재활복지학과	4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정보보안수리전공	20
						생활체육지도전공	40
예체능		사회체육학부	80		골프전공	20	
-		소 계	285		축구매니지먼트전공	20	
인문사회	-	글로벌자율전공학부	25				
		소 계	25				
총 계 <총모집인원 2,075명, 주간1,985명/야간 90명>				주	야		
				1,985	90		

2013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인문사회	유럽미주대학	영어학부	110	(40)		
		영어통번역학부	70			
		프랑스어과	40			
		독일어과	40			
		스페인어과	6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40			
		러시아어과	40			
		이탈리아어과	35			
		EU지역통상학과	40			
	소 계	475	(40)			
	아시아대학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65			
		비즈니스일본어학부	105	(40)		
		중국어학부	130	(40)		
		중국지역통상학과	50			
		태국어과	4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40			
		아랍어과	40			
		인도어과	40			
		베트남어과	40			
		미얀마어과	40			
	터키·중앙아시아어과	40				
	소 계	630	(80)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학부	60			
		영상미디어학과	40			
		역사관광학과	40			
		법·경찰학부	80			
		외교학과	40			
		소 계	260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경영학부	90			
		국제무역학과	50			
		회계·세무행정학부	70			
		e-비즈니스학과	45			
		경제학과	40			
데이터경영·금융학부		55		데이터경영전공	30	
국제비서학과		50		금융보험수리전공	25	
러시아·인도통상학부		50				
소 계	450					
공학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40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디지털미디어학부	80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예체능		스포츠·	(사회체육)	80		
인문사회		재활복지학부	(재활복지)	40		
		소 계		280		
인문사회	-	글로벌자율전공학부	25			
		소 계	25			
총 계			2,120	(120)		

※ ()안의 숫자는 야간입학정원으로 ()밖의 숫자에 포함.

[별표2]

계약학과 입학정원 (개정 2015.10.1, 2016. 8. 30.)

구분	단과대학	학과명[협약기관]	입학정원	학위
채용조건형	아시아대학	동남아장의융합학부(언어처리장의융합전공) [(주)씨에스엘아이]	10명	공학사

[별표3]

학위 증별 해당학과 (개정 2014.10.28, 2015.1.1, 2015.5.15, 2015.10.1, 2016.3.30, 2016. . .)

학위증별	학 부(과)	비고
문학사	영어과, 영어과(야), 영어학부, 영어학부(야), 영어통번역과, 영어통번역학부, 유럽학부, 프랑스·이탈리아학부, 중남미학부, 일본어과의융합학부, 일본어학부,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야), 비즈니스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컨텐츠전공,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중국학부(야), 중국어학부, 중국어학부(야), 불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스페인어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 러시아어과,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어전공,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이탈리아어과, 동남아시아학부, 태국어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아랍어과, 인도어과, 인도학부(인도어전공),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 중앙아시아어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문학부, 역사관광학과, 영상미디어학과, 영상언론융합학과, 역사관광·외교학부(역사관광전공)	
국제비서학사	국제비서학과, 국제비서·세무학부(국제비서전공)	
정치학사	외교학과, 역사관광·외교학부(외교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재활학과	
법학사	법·경찰학부, 법·경찰학부(법학전공)	
경찰행정학사	법·경찰학부(경찰행정전공)	
경영학사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행정학과, 회계·세무행정학부, e-비즈니스학과, 국제무역유통학부(유통물류전공), 국제비서·세무학부(세무전공)	
경제학사	경제학과, 데이터경영학과, 데이터경영·금융학부, 경제데이터금융학부	
무역학사	국제무역학과, 국제무역유통학부(국제무역전공)	
이학사	정보통계학과, 정보수리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임베디드IT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디지털미디어학부, 디지털미디어학부(전자정보통신, 인터넷미디어전공),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정보보호학과 언어처리장의융합학과, 동남아장의융합학부(언어처리장의융합전공)	계약학과
정보시스템학사	<삭제>	
체육학사	사회체육학부, 스포츠 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	
재활복지학사	재활복지학과, 스포츠 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글로벌인재학사	글로벌자율전공학부, G2융합커뮤니케이션학과, 파이데이아장의인재학과	
국제통상지역학사	EU지역통상학과, 중국지역통상학과, 중국학부(중국지역통상전공), 러시아·인도통상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지역통상전공), 인도학부(인도지역통상전공)	
국제언어(영어)학사	특성화교육원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	GLE
외국어(영어,일본어, 중국어)학사	실무외국어인력 양성과정	ILE GLS
한국어교육학사	한국어교육전공	
국제비서학사	국제비서전공	
관광통역학사	관광통역전공(영어,일본어,중국어)	
국제통상물류학사	국제통상물류전공	
지중해지역학사	지중해지역연구전공	
중남미지역학사	중남미비즈니스전공	연계 전공
동남아지역학사	동남아지역연구전공	
국제지역경영학사	EBK전공	
인문경영학사	글로벌마케팅전공	
국제개발협력학사	글로벌개발협력전공	융합 전공
인문IT학사	글로벌모바일비즈니스전공	
글로벌인재학사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 ○

생년월일 ○○○○년 ○○ 월 ○○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학사의 자격을 인정함.

전 공: ○○ 학(○○학사)

○○ 학(○○학사)

부전공: ○○ 학

○○○○년 ○○ 월 ○○ 일

○○ 대학장 ○○(학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 월 ○○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학위) ○ ○ ○(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 2호 서식]	<p style="text-align: right;">학위번호 : 부산외대 00학 0000</p> <p style="text-align: center;">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p> <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the degree of</p> <p style="text-align: center;">Bachelor of ○ in ○</p> <p style="text-align: center;">At the Department of ○ ○</p> <p>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p> <p style="text-align: center;">Given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p> <p style="text-align: center;">February 24, 2012</p> <hr/> <p>○○○ DEAN, COLLEGE OF ○○○</p> <p style="text-align: right;">○○○ PRESIDENT OF THE UNIVERSITY</p>
--------------	---

II. 학사운영규정

1. 교육과정운영규정

제정 : 1992. 10. 1.

개정 : 1993. 6. 1, 1993. 11. 3, 1994. 11. 15, 1997. 3. 4, 1999. 3. 1, 2000. 8. 1, 2001. 3. 1, 2003. 3. 1, 2005. 6. 28, 2005. 11. 8, 2006. 11. 14, 2009. 5. 6, 2010. 2. 17, 2010. 12. 28, 2011. 12. 5, 2011. 12. 30, 2012. 2. 24, 2013. 2. 28, 2015. 5. 15, 2016. 3. 30, 2016.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과정의 편성, 교과목개설, 분반 및 폐강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1. 8, 2010. 2. 17, 2011. 12. 5, 2013. 2. 28, 2015. 5. 15.)

1. 교양과정은 커뮤니티교양, 아르케기초교양, 아르케자유인문교양, 코스모교양, 프라그마교양으로 구분하며, 아르케기초교양에는 영어역량 영역 및 기초역량영역을 두고, 아르케자유인문교양에는 미메시스(문학과예술)영역, 에피스테메(역사와철학)영역, 프로네시스(현대사회)영역, 테크네(과학과기술)영역을 둔다.(개정 2009. 5. 6, 2013. 2. 28, 2015. 5. 15.)

2. 전공과정은 취업커뮤니티, 전공기본, 전공심화 실무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2. 30, 2013. 2. 28, 2015. 5. 15.)

3. 일반선택과정은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ILE과정, GLE과정, 자유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2. 17, 2013. 2. 28.)

② 삭제 <2015. 5. 15.>

제2조의 2(교육과정의 기본이수표) ① 교육과정의 기본이수표는 별표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정 보고서를 따른다.

② 학사과정의 졸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본이수표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교양과정의 학점취득은 인문학분야 교양을 8학점 이상 포함한 교과영역별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인문학분야 교양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6. 5. 10.)

[본조신설 2016. 3. 30.]

제3조(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교과과정 결정) 교과과정의 편성 및 조정은 해당학부(과) 교수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조(학점수) (삭제 1997. 3. 4)

제6조(편성 교과목의 변경) 편성된 교과목은 4년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4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교과목 개설)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은 편성 원칙에 의하여 학년, 학기별 격년제로 개설 할 수 있다.

②(삭제 1997. 3. 4)

③(삭제 1997. 3. 4)

제8조(분반) 수강 신청된 자료에 의거 강사 사정 및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반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80명 초과. 단, 외국어영역 및 PC관련 과목은 50명, 발표, 토론, 글쓰기 관련 과목은 40명 초과(개정 2009. 5. 6.)

2. 전공, 교직과목 60명 초과(개정 2013. 2. 28.)

3. 회화 및 실습과목은 실습실 수용인원 감안

제9조(교과과정 적용) ① 교과과정의 적용은 입학년도에 의하며 학적 변동자는 제4항에 의한다.

② 졸업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영역별 소요학점을 교육과정기본이수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6, 2010. 12. 28, 2013. 2. 28.)

③(삭제 1997. 3. 4)

④ 학적변동자에 대한 교과과정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적변동 전을 구교과과정, 학적변동 후를 신교과과정으로 정의하고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의 교과이수는 학적변동 전은 구교과과정, 학적변동 후는 신교과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년도 또는 복학(재입학) 시점의 해당년도 적용 교과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8.)
 2. 교양과정, 전공과정 등의 졸업소요학점은 입학년도 또는 복학(재입학) 시점의 해당년도 적용 교과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0. 2. 17, 2013. 2. 28, 2015. 5. 15.)
 3. 구교과과정에서 이수하지 못한 필수과목이 신교과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삭제 1999. 3. 1)
 5. (삭제 1999. 3. 1)
 6. (삭제 1999. 3. 1)
 7.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자를 위하여 계절학기에 해당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⑤ 편입학생은 편입학 후 잔여학기 동안 반드시 해당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인정학점을 포함한 총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5. 6, 2013. 2. 28.)
 - ⑥ 복수학위제나 장기수학제 등을 통하여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교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 2. 17.)
 - ⑦ 외국어 관련 학부(과) 학생 중 외국어 능력 우수 학생에 대하여 전공기본학점의 일부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면제받은 학점은 해당 학부(과)의 전공과정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4, 개정 2013. 2. 28.)
 - ⑧ 조기졸업하는 자, 국내·외 교류수학하는 자, 교육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는 자는 해당 학기의 필수과목 이수를 면제하며, 해당 학점은 동일 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5.)
- 제10조(폐강)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 : 주간 30명 미만, 야간 및 외국어 영역 20명 미만

2. 전공과정 : 5명 미만
 - ② (삭제 1997. 3. 4)
- 제11조(개설 제외) ① 연속 2학기 이상 폐강되거나 2년에 2회 이상 폐강되는 과목은 개설강좌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12. 28.)
- ② 교양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과목 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 12. 28, 개정 2013. 2. 28.)
- 제12조(강의시간 배정) (삭제 1997. 3. 4)
- 제13조(강의시간표의 확정) (삭제 1997. 3. 4)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교과과정 운영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 ② (경과조치) 90학번 이전 법학과 학생으로써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 3, 4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구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 법학과 입학생으로써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 3, 4학년에 복학하는 학생의 졸업소요 학점은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7 이전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과목은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적용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인 졸업학점 140학점(법학부 150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 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이전의 재적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적용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인 졸업학점 140학점(법학부 150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 변동에 의하여 2005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5. 6.)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적용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법·경찰학부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인 졸업학점 140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 변동에 의하여 2012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2. 1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28.)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5.)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글로벌자유전공학부 교육과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 12.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2.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2. 28.)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편입학생 취득 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른 편입학생의 취득 학점은 2013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 5.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3.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5. 10.)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의 2의 3항, 인문학분야 교양 8학점 이상 필수 이수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교육과정 기본이수표[신설 2016. 3. 30.] (개정 2016. 5. 10.)

가. 2015 교육과정 기본이수표 (2015, 2016학번 적용)

구분	교과구분	학점	비고	
교양 과정	커뮤니티교양	4	1학년	
	아르케기초교양	영어역량	6	1학년(외국인:한국어역량교양)
		기초역량	6	1학년
	아르케자유인문교양	미메시스(문학과예술)	3	2~4학년
		에피스테메(역사와철학)	3	
		프로네시스(현대사회)	3	
		테크네(과학과기술)	3	
	코스모교양	3	2~4학년	
	프라그마교양	4	2~4학년	
교양과정 합계	35			
전공 과정	취업커뮤니티	2		
	전공기본/전공심화실무/전공선택	72	부전공(21학점),복수전공(36학점) 이수시 54학점 이수	
	전공과정 합계	74		
일반선택과정		0-21		
졸업이수학점		130	전공졸업시험 통과	

나. 2017 교육과정 기본이수표 (2017학번 적용)

1) 총괄표

구분	교과구분	학점	비고
교양 과정	-	43	
전공 과정	취업커뮤니티	2	
	전공기본/전공심화실무/전공선택	63	부전공(21학점),복수전공(36학점) 이수시 48학점 이수
	전공과정 합계	65	
일반선택과정		0-21	
졸업이수학점		130	전공졸업시험 통과

2) 단대별 교양과정 기본이수표

○ 영일중대학, 글로벌지역대학, 사회·상경대학

구분	교과구분		학점	대상
교양 과정	커뮤니티교양*		6	1학년
	아르케기초교양	영어역량	6	1학년
		기초역량	6	
	아르케자유인문교양	미메시스(문학과예술)	6	2~4학년
		에피스테메(역사와철학)	6	
		프로네시스(현대사회)	3	
		테크네(과학과기술)	3	
	코스모교양		3	2~4학년
	프로그마교양		4	1~4학년
교양과정 합계		43		

○ 이공대학

구분	교과구분		학점	대상
교양 과정	커뮤니티교양*		6	1학년
	아르케기초교양	영어역량	6	1학년
		기초역량	6	
	아르케자유인문교양	미메시스(문학과예술)	3	2~4학년
		에피스테메(역사와철학)	3	
		프로네시스(현대사회)	3	
		테크네(과학과기술)	9	
	코스모교양		3	2~4학년
	프로그마교양		4	1~4학년
교양과정 합계		43		

○ 인문기반 융합전공

구분	교과구분		학점	대상
교양 과정	커뮤니티교양*		6	1학년
	아르케기초교양	영어역량	6	1학년
		기초역량	6	
	아르케자유인문교양	미메시스(문학과예술)	0	2~4학년
		에피스테메(역사와철학)		
		프로네시스(현대사회)		
		테크네(과학과기술)	3	
	AHP 클래식		18	
	코스모교양		0	2~4학년
프로그마교양		4	1~4학년	
교양과정 합계		43		

※ 커뮤니티교양은 ① 채플 2학점 ② BUFS커뮤니티 3학점 ③ 사회봉사 1학점을 이수해야 함.

2. 수강신청규정

제정 : 1997. 9. 1

개정 : 1998. 5. 21, 1999. 3. 1, 2000. 3. 1, 2001. 3. 1, 2002. 3. 1, 2003. 3. 1, 2004. 2. 1, 2005. 6. 28, 2007. 12. 20, 2008. 7. 25, 2009. 5. 6, 2009. 12. 28, 2012. 1. 31, 2014. 10. 28, 2015. 5. 15, 2015. 10. 1, 2016. 3. 30, 2016.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강신청은 소정의 기일 내에 소속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28.)

제3조(수강신청지도)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복학한 자, 편입학한 자, 재입학한 자 및 졸업대상자 등의 이수 과목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등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4조(이수학점) ① 수강신청 학점은 매 학기 17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012.1.31.)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최대 수강신청학점에서 2학점을 제한한다. 단,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학사경고자 대상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31, 2015.5.15.)
3. 교외 사이버강좌(가상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4. 영어권 대학 복수학위 트랙 예비선발자와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학생은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27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5.15.)
5. 4학년은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다.(개정 2012.1.31.)

6.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및 학·석사통합과정 이수예정자는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31.)

7. 국제통상지역전문가(GLE) 양성과정의 수강신청 학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2.1.31.)

8.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6학기 및 7학기에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추가로 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4.10.28.)

9. 직전학기에 필수상담을 초과하여 3회 이상 상담한 자는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추가로 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10.1.)

10. 학군사관후보생은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 9. 1.)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④ OCU 컨소시엄 개설교과목은 매학기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졸업 시까지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은 자는 학기별 수강과목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12.1.31, 2015.5.15.)

⑤ ROTC의 군사학 과목 및 안보학 관련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이 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학원 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시에 6학점 범위 내에서 그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부과정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09.12.28.]

제4조의2(학점이월제) 직전학기에 최대수강신청 학점인 19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한 학점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1. 본교 학생의 국내 및 국외 타 대학 수학과
2. 현장실습 이수자
3. 학사경고자

- 4. 8학기 이상 이수자
 - 5. 타대학 학생의 본교 수험자
 - 6. 수강신청한 과목 중 포기한 학점이 있는 자
- [본조신설 2016.3.30.]
- 제5조(교과이수) 필수 교과목은 개설된 그 학기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학년 필수교과목 중 미이수(미이수 또는 낙제)과목부터 우선 이수해야 한다.
- 제6조(재수강)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기취득성적을 취소하고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최대 등급은 A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3.30.)
- ② 재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재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09.12.28.)
- 제7조(수강신청의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변경해야 한다.(개정 2009.12.28.)
- 제8조(수강취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취소는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의 수강 인원이 폐강 기준인원에 미달될 경우 수강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수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경우 종전규정인 18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1학점(법학부 23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고, 제3항의 경우 학사경고자는 종전규정인 3학점을 제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7.25.)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5.6.)

-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법·경찰학부 입학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12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12.28.)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3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0.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0.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3.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학점 이월제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학점 이월제는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반영하여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6. 9. 1.)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수강의 최대 등급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재수강시 취득 가능한 최대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

제정 : 1997. 3. 1.

개정 : 1999. 3. 1, 2000. 3. 1, 2001. 3. 1, 2002. 7. 10, 2003. 3. 1, 2004. 2. 1, 2005.6. 28, 2007. 2. 20, 2007. 12. 20, 2009. 12. 28, 2010. 6. 7, 2010. 12. 28, 2011. 4. 29, 2011. 5. 1, 2012. 2. 22, 2013. 1. 23, 2013. 12. 12, 2014. 3. 1, 2014. 3. 17, 2014. 10. 28, 2015. 1. 1, 2015. 7. 17. 2016. 10.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 학칙 제9장에 의한 시험 및 학업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업이수평가) ① 학업이수의 평가는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기·실험 및 이에 준하는 교과목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② 학업이수의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12.28.)

- 1. 출석 10~20%
- 2. 시험 및 과제물 등 80~90%

제2장 출 석

제3조(지각·조퇴 및 퇴실) ① 수업시간 시작 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조퇴는 강의 도중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후 퇴실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출·결석 확인 후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없이 강의 도중에 퇴실하는 것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조(출석평가) 학생은 매 학기 수강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

제5조(공인결석)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학생이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로써 교육혁신교무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개정 2011.5.1, 2013.1.23, 2016.10.12)
- 2. 학생이 상을 당하여 결석할 때 부모상 5일, 조부모 및 형제자매상은 3일까지의 기간. 다만,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
-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서가 있을 때에 3일 이내
- 4.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 7일 이내 (신설 2010.12.28.)
- 5.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 국비 교육 등 포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해당 기간) (신설 2016.10.12)
- 6.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개정 2010.12.28.)

제3장 시험

제6조(시험의 구분) ① 학업이수의 평가를 위한 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학사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을 말한다.
2. 임시시험 : 학기 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추가시험 :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에게 재기회를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특별시험 : 해당 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시험은 과제물 성적에 산입할 수 있다.

제7조(추가시험 신청) 추가 시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8조(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수강신청 미필자)
3.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제9조(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①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이를 징계한다.

② 제1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지도위원회가 행한다.

제4장 학업성적

제10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1학년과 고학년은 각각 분리하여 상대평가한다.

단, 다음과 같은 교과목 또는 학년은 절대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0.12.28, 2011.4.29., 2012.2.22.)

1.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신설 2011.4.29.)

2. 수강생이 10명 이상이지만, 학년(1학년/2,3,4학년) 별로 분리시 10명 미만이 되는 학년 (신설 2011.4.29.)

3. 실기 및 실험 교과목 (신설 2011.4.29.)

4.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은 교과목 (신설 2011.4.29.)

②(삭제 2010.12.28.)

③(삭제 2009.12.28.)

④ 절대평가는 A등급 이상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혁신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12.28, 2011.4.29, 2013.1.23, 2016.10.12)

⑤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별 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0.12.28., 2013.12.12)

등급	비율
A+ A	25% 이하
B+ B	45% 이하
C+ 이하	30% 이상

⑥(삭제 2013.12.12.)

⑦ 성적입력 기간이 종료되어도 성적 평가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한 교과목은 해당 학부(과)장이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⑧(삭제 2010.6.7.)

⑨(삭제 2010.12.28.)

제11조(성적의 열람)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담당교수가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을 입력하며, 담당교수가 성적입력을 완료한 후 수강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학업성적을 열람한 결과 이의가 있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확인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업성적처리표)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교과목별 성적이 기재된 학업성적처리표를 학사관리팀과 담당교수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5.1, 2016.10.12)

제14조(성적의 정정) 학업성적 열람기간 이후의 학업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업성적 정정 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개정 2011.5.1, 2016.10.12)
제15조(자료 보관) 시험 답안지 및 기타 학업성적 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학사관리팀에서 요구할 때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부는 소정의 기일 내에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 2016.10.12)

제16조(인정학점) ①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 이상 수강한 자가 군 입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이나 출석, 과제물 등을 참조하여 학업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업성적인정신청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 2016.10.12)

③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학사학위 과정에서 취득한 대학원 전공과목 학점은 학사학위 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

제17조(평점평균) ① 각 과목의 해당 학점에 취득 성적 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총 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평점평균} = \frac{(\text{교과목별 학점수} \times \text{취득과목별 평점})\text{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학점수}}$$

②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8조(순위 산정) 학업성적에 따른 순위는 평점평균, 취득 학점수, 성적총점, 높은 등급이 많은 자, 교양 교과목 성적, 전공 교과목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전 학년 평점 평균,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의 유무 순으로 한다.

제19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본인에게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한 졸업 예정자와 6학점 이하 신청자의 학업성적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2.)

②(삭제 2012.2.22.)

제20조(성적포기) (삭제 2014.3.1.)

제21조(부칙의개정) 이 규정 부칙상 성적포기 제도 폐

지(제20조) 시행일을 “2014년 3월 1일”에서 “2014년 3월 17일”로 한다.(조문신설 2014.3.17.)

제22조(성적등급의 환산) ①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백분율환산표를 적용한다.(신설 2015.1.1.) (개정 2015.7.17.)

②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까지 계산한다. (신설 2015.7.17.)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이전 통보 받은 학사경고는 이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로 본다.
2.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규정 제 10조에도 불구하고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후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사경고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3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2.28.)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6.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적포기에 관한 사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12.28.)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4.29.)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타규정개정 2011.5.1.)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2.22.)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12.)

(적용학기) 이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0.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7.17.)

부 칙(개정 2016.10.12.)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성적평점백분율환산표(신설 2015.7.16.)

평점	백분율 환산점수																
4.50	100.00	3.99	94.17	3.48	88.34	2.97	82.51	2.46	76.69	1.95	70.86	1.44	65.03	0.93	59.20	0.42	53.37
4.49	99.89	3.98	94.06	3.47	88.23	2.96	82.40	2.45	76.57	1.94	70.74	1.43	64.91	0.92	59.09	0.41	53.26
4.48	99.77	3.97	93.94	3.46	88.11	2.95	82.29	2.44	76.46	1.93	70.63	1.42	64.80	0.91	58.97	0.40	53.14
4.47	99.66	3.96	93.83	3.45	88.00	2.94	82.17	2.43	76.34	1.92	70.51	1.41	64.69	0.90	58.86	0.39	53.03
4.46	99.54	3.95	93.71	3.44	87.89	2.93	82.06	2.42	76.23	1.91	70.40	1.40	64.57	0.89	58.74	0.38	52.91
4.45	99.43	3.94	93.60	3.43	87.77	2.92	81.94	2.41	76.11	1.90	70.29	1.39	64.46	0.88	58.63	0.37	52.80
4.44	99.31	3.93	93.49	3.42	87.66	2.91	81.83	2.40	76.00	1.89	70.17	1.38	64.34	0.87	58.51	0.36	52.69
4.43	99.20	3.92	93.37	3.41	87.54	2.90	81.71	2.39	75.89	1.88	70.06	1.37	64.23	0.86	58.40	0.35	52.57
4.42	99.09	3.91	93.26	3.40	87.43	2.89	81.60	2.38	75.77	1.87	69.94	1.36	64.11	0.85	58.29	0.34	52.46
4.41	98.97	3.90	93.14	3.39	87.31	2.88	81.49	2.37	75.66	1.86	69.83	1.35	64.00	0.84	58.17	0.33	52.34
4.40	98.86	3.89	93.03	3.38	87.20	2.87	81.37	2.36	75.54	1.85	69.71	1.34	63.89	0.83	58.06	0.32	52.23
4.39	98.74	3.88	92.91	3.37	87.09	2.86	81.26	2.35	75.43	1.84	69.60	1.33	63.77	0.82	57.94	0.31	52.11
4.38	98.63	3.87	92.80	3.36	86.97	2.85	81.14	2.34	75.31	1.83	69.49	1.32	63.66	0.81	57.83	0.30	52.00
4.37	98.51	3.86	92.69	3.35	86.86	2.84	81.03	2.33	75.20	1.82	69.37	1.31	63.54	0.80	57.71	0.29	51.89
4.36	98.40	3.85	92.57	3.34	86.74	2.83	80.91	2.32	75.09	1.81	69.26	1.30	63.43	0.79	57.60	0.28	51.77
4.35	98.29	3.84	92.46	3.33	86.63	2.82	80.80	2.31	74.97	1.80	69.14	1.29	63.31	0.78	57.49	0.27	51.66
4.34	98.17	3.83	92.34	3.32	86.51	2.81	80.69	2.30	74.86	1.79	69.03	1.28	63.20	0.77	57.37	0.26	51.54
4.33	98.06	3.82	92.23	3.31	86.40	2.80	80.57	2.29	74.74	1.78	68.91	1.27	63.09	0.76	57.26	0.25	51.43
4.32	97.94	3.81	92.11	3.30	86.29	2.79	80.46	2.28	74.63	1.77	68.80	1.26	62.97	0.75	57.14	0.24	51.31
4.31	97.83	3.80	92.00	3.29	86.17	2.78	80.34	2.27	74.51	1.76	68.69	1.25	62.86	0.74	57.03	0.23	51.20
4.30	97.71	3.79	91.89	3.28	86.06	2.77	80.23	2.26	74.40	1.75	68.57	1.24	62.74	0.73	56.91	0.22	51.09
4.29	97.60	3.78	91.77	3.27	85.94	2.76	80.11	2.25	74.29	1.74	68.46	1.23	62.63	0.72	56.80	0.21	50.97
4.28	97.49	3.77	91.66	3.26	85.83	2.75	80.00	2.24	74.17	1.73	68.34	1.22	62.51	0.71	56.69	0.20	50.86
4.27	97.37	3.76	91.54	3.25	85.71	2.74	79.89	2.23	74.06	1.72	68.23	1.21	62.40	0.70	56.57	0.19	50.74
4.26	97.26	3.75	91.43	3.24	85.60	2.73	79.77	2.22	73.94	1.71	68.11	1.20	62.29	0.69	56.46	0.18	50.63
4.25	97.14	3.74	91.31	3.23	85.49	2.72	79.66	2.21	73.83	1.70	68.00	1.19	62.17	0.68	56.34	0.17	50.51
4.24	97.03	3.73	91.20	3.22	85.37	2.71	79.54	2.20	73.71	1.69	67.89	1.18	62.06	0.67	56.23	0.16	50.40
4.23	96.91	3.72	91.09	3.21	85.26	2.70	79.43	2.19	73.60	1.68	67.77	1.17	61.94	0.66	56.11	0.15	50.29
4.22	96.80	3.71	90.97	3.20	85.14	2.69	79.31	2.18	73.49	1.67	67.66	1.16	61.83	0.65	56.00	0.14	50.17
4.21	96.69	3.70	90.86	3.19	85.03	2.68	79.20	2.17	73.37	1.66	67.54	1.15	61.71	0.64	55.89	0.13	50.06
4.20	96.57	3.69	90.74	3.18	84.91	2.67	79.09	2.16	73.26	1.65	67.43	1.14	61.60	0.63	55.77	0.12	49.94
4.19	96.46	3.68	90.63	3.17	84.80	2.66	78.97	2.15	73.14	1.64	67.31	1.13	61.49	0.62	55.66	0.11	49.83
4.18	96.34	3.67	90.51	3.16	84.69	2.65	78.86	2.14	73.03	1.63	67.20	1.12	61.37	0.61	55.54	0.10	49.71
4.17	96.23	3.66	90.40	3.15	84.57	2.64	78.74	2.13	72.91	1.62	67.09	1.11	61.26	0.60	55.43	0.09	49.60
4.16	96.11	3.65	90.29	3.14	84.46	2.63	78.63	2.12	72.80	1.61	66.97	1.10	61.14	0.59	55.31	0.08	49.49
4.15	96.00	3.64	90.17	3.13	84.34	2.62	78.51	2.11	72.69	1.60	66.86	1.09	61.03	0.58	55.20	0.07	49.37
4.14	95.89	3.63	90.06	3.12	84.23	2.61	78.40	2.10	72.57	1.59	66.74	1.08	60.91	0.57	55.09	0.06	49.26
4.13	95.77	3.62	89.94	3.11	84.11	2.60	78.29	2.09	72.46	1.58	66.63	1.07	60.80	0.56	54.97	0.05	49.14
4.12	95.66	3.61	89.83	3.10	84.00	2.59	78.17	2.08	72.34	1.57	66.51	1.06	60.69	0.55	54.86	0.04	49.03
4.11	95.54	3.60	89.71	3.09	83.89	2.58	78.06	2.07	72.23	1.56	66.40	1.05	60.57	0.54	54.74	0.03	48.91
4.10	95.43	3.59	89.60	3.08	83.77	2.57	77.94	2.06	72.11	1.55	66.29	1.04	60.46	0.53	54.63	0.02	48.80
4.09	95.31	3.58	89.49	3.07	83.66	2.56	77.83	2.05	72.00	1.54	66.17	1.03	60.34	0.52	54.51	0.01	48.69
4.08	95.20	3.57	89.37	3.06	83.54	2.55	77.71	2.04	71.89	1.53	66.06	1.02	60.23	0.51	54.40	0.00	0.00
4.07	95.09	3.56	89.26	3.05	83.43	2.54	77.60	2.03	71.77	1.52	65.94	1.01	60.11	0.50	54.29		
4.06	94.97	3.55	89.14	3.04	83.31	2.53	77.49	2.02	71.66	1.51	65.83	1.00	60.00	0.49	54.17		
4.05	94.86	3.54	89.03	3.03	83.20	2.52	77.37	2.01	71.54	1.50	65.71	0.99	59.89	0.48	54.06		
4.04	94.74	3.53	88.91	3.02	83.09	2.51	77.26	2.00	71.43	1.49	65.60	0.98	59.77	0.47	53.94		
4.03	94.63	3.52	88.80	3.01	82.97	2.50	77.14	1.99	71.31	1.48	65.49	0.97	59.66	0.46	53.83		
4.02	94.51	3.51	88.69	3.00	82.86	2.49	77.03	1.98	71.20	1.47	65.37	0.96	59.54	0.45	53.71		
4.01	94.40	3.50	88.57	2.99	82.74	2.48	76.91	1.97	71.09	1.46	65.26	0.95	59.43	0.44	53.60		
4.00	94.29	3.49	88.46	2.98	82.63	2.47	76.80	1.96	70.97	1.45	65.14	0.94	59.31	0.43	53.49		

*산식=
 ((평점*100)-100)
 *0.114285)
 +60+0.000025
 단, 평점0의
 환산점수는0임

4.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정 : 1997. 9. 1.

개정 : 1999. 3. 1, 2003. 3. 1, 2004. 2. 1, 2005. 6. 28, 2007. 12. 20, 2010. 6. 7, 2012. 1. 31, 2015. 5. 15, 2016.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장에서 규정한 학적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규정에서 학적 변동은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31.)

제3조(휴학의 조건) ① 휴학은 재학 중 입영,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중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 휴학은 일반휴학, 병역휴학, 창업휴학, 행정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31, 2015.5.15, 2016.09.01.)

③ 휴학은 이 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입영 또는 질병(4주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휴학의 기간) ① 휴학은 1회에 2학기까 하며 휴학의 횟수는 재학 중 3회 이내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병역휴학, 창업휴학 및 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휴학은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휴학은 1회 4학기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5.]

제5조(휴학의 신청 시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에는 직전학기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학사유 발생 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경과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6조(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학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거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6.7, 2012.1.31.)

② 군휴학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귀향 조치를 받았

을 경우에는 군휴학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10.6.7, 2012.1.31.)

③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입영해야 할 자는 휴학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교과목별로 성적을 인정받아 이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1.31.)

④ ①항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에서 행정휴학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6.09.01.)

제6조의2(창업휴학 신청) ①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부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금융, 부동산, 숙박, 음식,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5.15.]

제7조(군휴학) ① 입영통지서를 교부 받아 군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휴학을 군휴학으로 한다.(개정 2010.6.7, 2012.1.31.)

② 군휴학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체대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 때 직전 학기와 동일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한 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1.31.)

제8조(일반휴학) ① 질병, 가사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는 휴학을 일반휴학이라 한다.

② (삭제 2010.6.7.)

③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본인 또는 다른 자의 수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일반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④ 일반휴학을 한 자가 입영을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휴학 연장신청을 하거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6.7.)

제8조의2(창업휴학) 창업 혹은 창업준비를 사유로 신청하는 휴학을 창업휴학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6.09.01]

제8조의3(행정휴학) ①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대학에서 처리하는 휴학을 행정휴학이라 한다.

② 행정휴학은 휴학 횟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며 1회에 한해 허가한다.

[본조신설 2016.09.01]

제9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기간이 만료되면 복학을 하여야 하며 매 학기 등록기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2010.6.7.)

② 휴학을 한 자는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병역 휴학자의 전역 일자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인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후라도 휴가기간 중의 수업 등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복학 때의 납입금)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 인정한다.

1. 수업일수 1/4 이전 : 등록금 전액
2. 수업일수 1/4 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3 경과 전 : 등록금의 2/3
3. 수업일수 1/3 경과 후부터 수업일수 1/2 경과 전 : 등록금의 1/2
4. 수업일수 1/2 경과 후 :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6.7.)

제12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하고 보호자에게 제적 통보를 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1.31.)
4. (삭제 2012.1.31.)
5. (삭제 2012.1.31.)
6. (삭제 2012.1.31.)
7.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징계 받아 제적된 자(개정 2012.1.31.)

② 제적을 철회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제적처리를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2.1.31.)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6.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3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9.1.)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휴학 처리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규정 제6조의4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휴 학 신 청 서

● 인적사항

학 번		학 년		성 명	
학(부)과	(A/B)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본 인:		
	이메일		보호자:		
주 소	(우: -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자는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정정하여야 함.					

● 휴학내용

일반휴학 (1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2 학기간)				*구비서류 질병휴학자 : 진단서 1부 (4주이상)
	<input type="checkbox"/> 경제사정 <input type="checkbox"/> 입영대기 <input type="checkbox"/> 어학연수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 <input type="checkbox"/> 질 병 <input type="checkbox"/> 재수험준비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기타 휴학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군 휴 학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학기간				
	입영일자	20 . . .	전역예정일	20 . .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호 자: (인) 학(부)과장: (인)					
※ 대리인 제출시만 기재 대리인 성 명: 대리인 생년월일: 대리인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등록 여부	도서대출 확인		전산입력 확인		
			월 일 (인)		

<별지 제2호 서식>

휴학연장신청서

● 인적사항

학 번		학 년		성 명	
학(부)과	(A/B)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본 인:		
	이메일		보호자:		
주 소	(우: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자는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정정하여야 함.					

● 휴학연장 내용

당초휴학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2 학기간)				
일반휴학 연장기간	20 년 학기부터 ~ 20 년 학기까지 (2 학기간)				
	* 휴학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입대휴학 연장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 학기간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입영일자	20 . . .	전역예정일	20 . . .	
위와 같이 휴학연장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호 자: (인)					
<p>※ 대리인 제출시만 기재</p> <p>대리인 성 명: 대리인 생년월일:</p> <p>대리인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등록 여부			전산입력 확인		
			월 일 (인)		

※유의사항

1. 신청 3일 후 휴학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안내 - 등록납부 및 학적 변동사항 조회
2. 군 입대 후 귀향 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군 휴학자는 전역일자를 고려하여, 수업일수 1/4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학할 수 있습니다.
4.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계적 처리되며 됩니다.
5.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우리대학 종합시스템에서 주소 변경을 하여야 학사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퇴학(자퇴) 신청서

● 인적사항

학 번		학 년		성 명	
학(부)과	(A/B)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본 인:		
	이메일		보호자:		
주 소	(우: - -)				

● 퇴학(자퇴)내용

신청사유	* 자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등록금 반환계좌 (보호자 명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학부(과)장: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등록금 환불여부	도서대출 확인	전산입력 확인			
월 일 (인)					

※ 제출서류: 등록금 반환 계좌 사본 1부

5. 계절학기운영규정

제정 : 1997. 3. 1.

개정 : 1999. 3. 1, 2004. 3. 1, 2005. 6. 28, 2009. 1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계절학기는 정규학기 이외의 학기로서 조기졸업, 부전공, 복수전공이수 및 재수강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양 및 전공과목의 학점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 ① 계절학기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 학점 당 강의시수 등은 정규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수강대상) ① 계절학기 수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학생으로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
 - 2. 학술교류협정 체결대학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생도 다음 학기 복학을 전제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취득 후 복학하지 아니하면 취득학점은 무효 처리된다. (전문개정 2009.12.28.)

제5조(수강신청 최대학점) 계절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6학점이며, 졸업 시까지 총 이수학점은 국외단기연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으로 제한한다.

제6조(개설 및 수강절차) ① 개설과목, 기간, 수강신청 및 수강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개설과목은 전공과목 20명 이상, 교양과목 30명 이상 수강 신청한 과목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8.)

제7조(학점처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고 당해학기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강료)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한다.

- 1. 수업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 2. 총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 3.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 ③ 납부한 수강료는 총 수업일수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12.28>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강신청 최대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인 계절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개정 2009.12.28.)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강료 납부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수강료 납부 반환은 2009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부터 적용한다.

6.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5.6.28.

개정: 2005.12.27, 2006.5.10, 2006.9.5, 2007.11.21, 2009.1.1, 2009.5.6, 2012.1.31, 2013.1.23, 2015.1.1, 2015.5.15, 2016.2.3, 2016.9.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 제46조와 국내·외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대외기관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2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본교에서 1학기(외국대학은 2학기)이상 이수한 자
3. 기 이수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 (단,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4. 외국대학과의 장기수학과정(본교에서 3년, 외국대학에서 1년 수학)은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제3조(지원시기 및 서류) ① 지원자는 수학 희망학기 개시 2월 이전에 본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국내대학은 학사지원센터에, 외국대학은 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1. 지원서 및 타 대학 수학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학부(과)장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타대학수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재학 및 성적증명서

제4조(수학기간 및 허가) 타 대학 수학기간은 1회 1학기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속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대학과의 장기수학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2.3.)

제5조(등록) 타 대학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 대학 계절학기 지원자는 수학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학점인정범위)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대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개정 2009.5, 2012.1.31.)

1. 국내대학: 학기당 17학점 이내(신설 2012.1.31.)
2.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장기수학해외학기제: 학기당 22학점 이내(신설 2012.1.31.)
3. 해외학기제: 학기당 18학점 이내(신설 2012.1.31.)

② 재학생이 학기 중 해외자매결연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해외학기제의 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인정학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9주: 9학점 이내 인정
2. 10~13주: 12학점 이내 인정
3. 14~17주: 18학점 이내 인정

③ 해당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신청) ① 타 대학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수학대학 이수성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장은 학점인정을 검토한 다음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한다. 단, 국외대학의 교과목명은 국문 및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제교류센터로 제출한다.(개정 2012.1.31.)

제8조(학점 인정) ①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 및 학점은 본교의 이수성적 및 학점으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국내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국내”,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국외”로 표기하고 합산 처리한다.

제9조(단기연수 학점인정) ① 해외어학연수 등 국내외 타 대학에서 단기연수를 받았을 때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1. 동·하계 방학기간 중 타 대학에서 단기연수를 받았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에 6학점 이내로 하며 최대 인정범위는 12학점 이내로 한다.
2. 휴학기간 중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교에 복학한 후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

을 수 있다. 다만, 복학 직전학기에 이수한 성적에 한하며, 등록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이수학점의 신청은 연수 종료 후 1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0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수학신청) 타 대학 수학지원자 명단 및 관련 서류는 학기 개시(계절학기 포함)1개월 전까지 소속대학으로부터 통보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학허가 및 기간) ①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개시 (계절학기 포함)2주전까지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학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학생은 수학능력의 심사를 거쳐 전공을 배정하며 해당 학부(과)장은 외국인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13조(정원) 정규학기 타 대학 수학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부(과)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정원은 계절학기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등록 등)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본교에서 따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절학기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6조(학점인정 등) ①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거 본교 학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번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③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신분증 발급 및 시설물 이용) ①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프로그램이수학점인정

제19조(학교기업 및 산학협동프로그램) ① 본교에서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수행 및 대학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동 프로그램 협약체결 기업에 현장연수생으로 선발되어 해당기업의 산업현장에서 연수를 실시하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 및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개 학기당 15학점 이내로 하고 최대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 당 인정학점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09.1.1, 2016. 9.1)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주차	인정학점	주차	인정학점
2주~4주	3	4주 이상~6주 미만	3
5주~8주	6	6주 이상~8주 미만	6
9주~12주	12	8주 이상~10주 미만	9
13주~16주	18	10주 이상~12주 미만	12
		12주 이상	15

③ 학교기업 및 산학협동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고교-대학 연계학점인정프로그램) ① 고교-대학 학점인정프로그램에 의해 협약체결에 참여한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고등학교3학년 재학생이 본교에 입학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협약에 의해 2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2(외국어 캠프프로그램) 수시모집에 의해 입학이 확정된 자와 우리대학과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캠프프로그램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우리대학에 입학할 경우 3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3(재학생 영어캠프프로그램) 방학 중 재학생들이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재학생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2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 등급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한다.(신설 2007.11.21)

제20조4(근복무 중 학점인정) ①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은 제6조 1항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제20조5(비트교육센터 학점인정) ① 우리 대학의 비트교육센터에서 단기과정 및 고급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고급과정을 수료한 경우 재학생은 당해학기 18학점 이내, 휴학생은 계절학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휴학 중 수료한 경우 복학 후 직전 계절학기로 인정한다.

③ 단기과정을 수료한 경우 재학생, 휴학생 모두 계절학기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휴학 중 수료한 경우 복학 후 직전 계절학기로 인정한다.

④ 이수구분은 IT관련 학부(과) 및 전공의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하며, 그 외 학부(과) 및 전공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⑤ 성적 등급은 P(Pass) 또는 NP(Non Pass)로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20조6(외국어교육센터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우리대학의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대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1강좌당 1학점, 학기당 2학점 이내, 최대 4학

점 이내에서 자유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기 중 이수한 교과목은 정규학기 학점으로, 방학중 이수한 교과목은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 등급은 P(Pass) 또는 NP(Non-Pass)로 표기한다.

③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외국어교육센터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5.]

제5장 기 타

제21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학생교류에 관하여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 또는 기관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22조(복수학위제에 의한 교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장기수학제에 의한 교류) 외국대학과의 장기수학제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교류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이 규정 제정이전 타 대학에서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자의 이수과목 및 성적에 대해서는 종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교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20조3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제20조4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

- ①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현장실습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에 의한 학점인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5.6.)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31.)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3.)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비트교육센터 학점은 2014년 하계 계절학기부터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최대 수강신청 학점 범위 외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은 최대 수강신청 학점

범위 외 추가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16.09.0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비트교육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학점인정은 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 및 타대학 수학계획서

경 유	학부(과)장	학장

1. 인적사항						
학부(과)	(주·야)			학년	학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류(국내,국외) <input type="checkbox"/> 유학 <input type="checkbox"/> 연수			연락처 (HP,PP)	(☎)() -	
2. 이수사항						
총 이수학기	학기	총취득학점	학점	평점평균	/4.50	
3. 교류 대상 대학						
유학·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간)			대학명		
				체류 국가명		
4. 수학 목적 및 계획						
<p>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타대학 수학을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자 ①</p>						
<p>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p>						

※첨부 서류 : ①학부(과)장추천서1부, ②타대학수강신청서1부
③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1부



〈별지 제2호 서식〉

학부(과)장 추천서

200 학년도 제 학기

소속	학부(과)/ 전공 제 학년		
성명	(한글)	학 번	
	(영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집) (휴대전화) :		
교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월간)		
주소			

상기 학생을 학년도 학기 대학교에 교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장: (인)

교무처장 귀중

<별지 제4호서식>

학점인정 신청서

경 유	학부(과)장

1. 인적사항							
소 속	대학	학부(과·전공)(주·야)	학년		학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교류(국내·국외), <input type="checkbox"/> 장기수학(1년) <input type="checkbox"/> 복수학위(2년), <input type="checkbox"/> 해외연수 <input type="checkbox"/> 학교기업 및 산학협동프로그램		연락처(☎)	() -			
			HP				
2. 교류 대상 대학							
수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기업)명			
				국가명			
3. 학점 취득사항							
취득 교과목							비고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시간	학점	성적	등급	*교과목번호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1) ※ 표시는 기록하지 마세요.
 2) 첨부서류: 이수성적증명서1부(외국대학은 국문·영문 번역본 포함)

7. 졸업시험규정

제정 : 1997. 3. 1.

개정 : 2000. 3. 1, 2003. 3. 1, 2004. 2. 1, 2005. 6. 28,
2007. 12. 20, 2010. 6. 7, 2012. 2. 22, 2013. 1. 23,
2013. 8. 23, 2014.10.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7조(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졸업시험은 학부(과)별로 영어능력시험과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으로 한다.(개정 2010.6.7.)

②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은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실험실습 보고서나 실기발표 또는 공인된 기관의 전공 관련 어학시험 및 자격증 등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6.7.)

제3조(평가방법의 결정) 삭제 <2013. 8. 23.>

제4조(졸업시험 응시자격) ① 졸업논문 및 전공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0.6.7.)

② 삭제 <2010.6.7.>

③ 복수전공, 연계전공,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GLE), 외국어전문가 양성과정(ILE), 글로벌 외국어과정 이수자(GLS)는 졸업논문 또는 전공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수전공(과정)의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2(시험면제) 졸업논문 또는 전공졸업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부(과)장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특별한사유가 인정된 자
- 2. 학칙 제32조의9의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본조신설 2012.2.22.][전문개정 2014.10.28.]

제2장 영어능력시험

제5조(합격기준) 영어능력시험의 합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시험면제 등) ① 외부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

는 시험(TOEFL, TOEIC, TEPS)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대체인정 신청을 할 경우 총장은 이를 인정하여 해당자에 게 영어능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어능력 시험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체육특기자 등)이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서면 요청에 따라 총장은 해당자에게 영어능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졸업 논문

제7조(논문 계획서의 제출) 논문계획서는 해당학년도 3월말(후기졸업예정자는 전년도 9월말)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교수의 배정) 학부(과)장은 논문계획서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의 제목 작성법제출 및 발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한다.

제9조(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80매 이상으로 하되, 자연계 학부(과)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얻어 30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논문은 「학위청구 논문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11월말(후기 졸업예정자는 5월 말)까지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학부(과)별로 구성하되 지도교수가 심사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심이어야 한다.

제11조(심사)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발표 논문의 내용 체계타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장 전공종합시험

제12조(전공종합시험) 전공종합 시험과목은 해당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 중 2~3 과목으로 정한다.

제13조(전공종합시험의 평가) ① 전공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교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과목별로 50점 미만의 해당과목은 낙제로 한다.

② 과목별로 불합격한 자에게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

제14조(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 학부(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또는 실기발표 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계획서의 제출)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계획서 제출에 대하여는 제8조에 준한다.

제16조(평가방법) 실험실습보고 또는 실기발표를 시행하는 학부(과)에서 졸업시험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졸업시험 불합격자)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수료만 인정한다.

② 졸업시험은 재학 년한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합격을 졸업할 때까지 인정한다.(개정 2007.12.20)

④ 졸업시험 중 한 영역(영어능력시험 등)에서 불합격하였을 경우 합격한 영역은 유효하며 불합격한 영역만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물의 관리) 졸업시험의 평가물은 학부(과)에 제출하고 학부(과)에서는 이를 1년간 보관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졸업논문시행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영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졸업시험 중 영어능력시험 영역을 2000학년도 입학자가 졸업시험을 치를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105학점(법학부 114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6.7.)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2.22.)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8.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0.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 전공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 2. 28.

개정 : 2013. 6. 26, 2013. 9. 25, 2015.5.15., 2015.7.17, 2016.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학부제로 입학하는 자의 전공 배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 운영의 구분) ① 학부제로 입학하는 자의 전공 운영은 전공의 배정 시기에 따라 전공제와 트랙제로 구분한다.

② 전공제와 트랙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공제: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진급 때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운영 체제 (개정 2015.5.15.)
2. 트랙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 학점에 따라 졸업 때 전공을 배정하는 학부운영 체제

제2조2(전공배정 시기) 전공제 운영 학부의 전공배정 시기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진급시 별표와 같이 배정한다.

[본조신설 2015.5.15.]

제3조(학부의 교과운영) 학부의 운영 구분별 교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제 : 전공 단위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을 개설
2. 트랙제 : 학부 단위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과목을 개설

제4조(전공제 배정정원) 전공제 운영 학부의 전공별 배정정원은 학부의 전공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5조(전공배정 정원상한 기준) ① 전공제 운영 학부의 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공배정 정원내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 기준 인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6.26.)

② 제1항의 기준인원은

$$\text{“전공배정 대상자수} \times \frac{\text{학부 전공배정 정원}}{\text{(학부)모집정원}} \text{”}$$

으로 산출한다.

③ 전항의 전공배정대상자수라 함은 제1학년 1학기 또는 제1학년 제2학기를 마친 자로서 전공을 배정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5.15.)

제6조(전공배정 신청)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 전공배정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해당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공을 배정받지 아니한 자는 복학, 재입학과 동시에 전공배정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제7조(전공배정 기준) 전공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학기 총평점평균 순위에 따라 배정하되, 기준학점(정규학기)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후순위로 배정하며, 기준학점은 제1학년 2학기 진급시 16학점 이상, 제2학년 진급시 33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 등의 성적을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만 인정한다.(개정 2015.5.15.)
2. 제1지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제2지망 등의 순으로 배정한다.
3. 학부단위 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자와 외국인, 수업일수 3/4선 이후 학업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군휴학자 중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 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며 전공배정 대상자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5.5.15, 2015.7.17., 2016.03.30.)

제8조(동점자 처리기준) 전공배정 때 성적순이 동일할 경우에는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 제18조(순위산정)에 따른다.(개정 2013.6.26.)

제9조(전공배정 절차) 전공배정은 학부장이 전공배정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전공배정결과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전공배정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심의·검토한 후 확정된 사항을 학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배정대상자는 반드시 전공배정지원서를 제출한 후 휴학하여야 한다.

제11조(임의배정) 전공배정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임의로 배정한다.

1. 전공배정지원서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기타 원칙 및 지시사항을 위배한 자

부 칙(제정 2013.2.28.)

- ①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복학, 재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13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이 규정 제5조(전공배정 정원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입학자는 전공별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3.6.26.)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9.25.)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7.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3.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전공배정 대상자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3호 외국인의 전공배정 대상자수 미포함 조치는 2015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개정 2015.5.15, 2015.7.17, 2016.3.30.)

2014학년도 전공배정정원

학부명	전공명	정원(명)	전공배정 시기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제2학년 진급시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중국학부	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	4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40	
	중국지역통상전공	50	
인도학부	인도어전공	35	
	인도지역통상전공	25	
법·경찰학부	법학전공	40	
	경찰행정전공	40	
데이터경영·금융학부	데이터경영전공	30	
	금융보험수리전공	25	
디지털미디어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정보보안수리전공	20	

2015학년도 전공배정정원

학부명	전공명	정원(명)	전공배정 시기
영어학부	영어전공	50	제2학년 진급시
	영어통번역전공	50	
유럽학부	독일어전공	35	제1학년 2학기 진급시
	EU지역통상전공	35	
프랑스·이탈리아학부	프랑스어전공	35	
	이탈리아어전공	35	
중남미학부	스페인어전공	6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제2학년 진급시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중국학부	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	3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30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인도학부	인도어전공	30	
	인도지역통상전공	25	
법·경찰학부	법학전공	35	
	경찰행정전공	35	
경영학부	경영전공	65	
	회계전공	50	
	e-비즈니스전공	35	
국제무역유통학부	국제무역전공	40	
	유통물류전공	30	
국제비서·세무학부	국제비서전공	45	
	세무전공	30	
경제데이터금융학부	경제학전공	40	
	데이터경영전공	30	
	금융보험수리전공	25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2016학년도 전공배정정원

학부명	전공명	정원(명)	전공배정 시기
영어학부	영어전공	50	제2학년 진급시
	영어통번역전공	50	
유럽학부	독일어전공	32	제1학년 2학기 진급시
	EU지역통상전공	33	
프랑스·이탈리아학부	프랑스어전공	32	
	이탈리아어전공	33	
중남미학부	스페인어전공	6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중국학부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30	제2학년 진급시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인도학부	인도어전공	30	
	인도지역통상전공	25	
법·경찰학부	법학전공	25	
	경찰행정전공	35	
역사관광·외교학부	역사관광전공	35	
	외교전공	35	
경영학부	경영전공	65	
	회계전공	45	
국제무역유통학부	국제무역전공	40	
	유통물류전공	30	
국제비서·세무학부	국제비서전공	40	
	세무전공	25	
경제데이터금융학부	경제학전공	37	
	데이터경영전공	28	
	금융보험수리전공	25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5.15.)

전공배정지원서

1. 인적사항

학부		학 번	
성 명			
연락처	☎		
	HP		

2. 지망 전공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 수업일수 3/4선 이후(입영일 기준) 군입대자는 전공배정지원서를 제출하고 휴학하여야 한다.

※ 학부별 전공수에 따라 제1지망~ 제4지망까지 작성한다.

위와 같이 전공배정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학부장 : _____ (서명)

교무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5.15.)

전공배정결과표

구분 \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성적 배정	희망 배정	계									
배 정 자 수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미제출												
합 계													

년 월 일

학 부 장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교무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5.15.)

전공배정명단

()학부 ()전공

순위	성적배정		희망배정 ※학부 단위 이전에 학과로 입학한 자/무순으로 기입	
	성 명	학 번	성명	학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인원이 많을 시 칸을 추가하여 기입 바람

년 월 일

학 부 장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전공주임교수 : _____ (서명)

교무처장 귀하

9. 부(복수)전공·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이수 규정[제목개정 2015.10.1.]

제정 : 2013. 2. 28.

개정 : 2014.2.12, 2015.5.15, 2015.7.17., 2015.10.1, 2016.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10에서 규정한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전공 또는 산업체(기업), 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공 등을 말하며, ‘자기설계복수전공’이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개정 2015.10.1.)

제3조(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범위)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 대상은 개설된 모든 학부(과) 전공 및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5.15.)

제4조(이수신청 및 변경)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은 2학년부턴 이수할 수 있으며, 2학년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내에 학교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영여권 복수학위제 외성트랙 선발자는 1학년 1학기부터 파이데이터창의인재학과의 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6.3.30.)

제5조(이수학점) ①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의 이수기준은 별표의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기본이수표를 따른다.(별표 개정 2014.2.12, 2015.5.15, 2015.10.1.)

②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신청자가 졸업할 때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 취득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③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검토하여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

제6조(수강지도)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소속 학부(과)장과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0.1.)

제7조(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의 포기) ①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포기 신청자가 부전공의 이수를 희망하여 학교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이수 교과목을 심사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

제8조(학위수여 등) ① 주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학적부에 이를 표기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9조(연계전공 폐지) 최근 3년간 평균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연계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5.7.17.)

부 칙(제정 2013.2.28.)

①(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부전공이수규정, 복수전공이수규정, 연계전공이수규정은 폐지한다.

③(부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별 이수학점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4.2.12.)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별 이수학점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된 전공별 이수학점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7.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0.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2학기에 신청한 자기설계복수전공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규정명 변경) 이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부(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 규정’을 개정 규정명으로 변경한다.

부 칙(개정 2016.3.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2학기에 신청한 복수전공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복수전공 기본이수표
(개정 2014.2.12, 2015.5.15, 2015.10.1.)

1. 기본이수표

구분	이수구분	주전공 이수학점	복수/부/연계/자기설계복수 전공 이수학점
복수전공	취업커뮤니티	2학점	-
	전공기본/ 전공심화실무	5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부전공	취업커뮤니티	2학점	-
	전공기본/ 전공심화실무	54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연계전공	취업커뮤니티	2학점	-
	전공기본/ 전공심화실무	5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EBK연계전공은 42학점 이상)
자기설계복수전공	취업커뮤니티	2학점	-
	전공기본/ 전공심화실무	5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2. 세부 이수 방법

가. 부전공/복수전공 세부 이수 방법

구분	동일 학부내	학과간 / 학부간
부전공	- 동일 학부내에서 다른 전공을 추가로 부전공 이수 하는 경우 해당 전공 과목으로 21학점 취득	- 해당 학부 전공 또는 학과의 과목으로 21학점 취득
복수전공	- 동일 학부내에서 다른 전공을 추가로 복수전공 이수하는 경우 해당 전공 과목으로 36학점 취득	- 해당 학부 전공 또는 학과의 과목으로 36학점 취득

나. 학부 및 학과에서 트랙을 이수하는 경우 1개의 세부 트랙만 이수할 수 있으며, 1개의 세부 트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트랙 과목으로 최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10. 전부(과) 규정

제정 : 1997.3.1.

개정 : 1999.3.1, 2000.3.1, 2004.2.1, 2007.2.20, 2009.12.28, 2011.4.29, 2012.1.31, 2015.1.1, 2015.5.15, 2016.2.3, 2016.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장에서 규정한 전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부(과)라 함은 이 대학교 내에서의 소속 학부(과) 및 동일학부 내 전공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5.5.15.)

제3조(시기) ① 전부(과)는 제2학년 매 학기 및 제3학년 개시 30일 이전에 실시하며 재학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동일학부 내 전공간 전환은 전공배정을 한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2.3.)

제4조(허용범위) ① 전부(과)에 의한 전입 허용인원은 학부(과) 및 전공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로 하며 전출 허용인원은 학부(과) 및 전공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인원 산정시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2.1.31, 2015.5.15, 2016. 9. 1.)

② 동일학부(과) 내의 주·야간 전부(과)는 해당학부(과)에 제적자가 있어야 하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1.31.)

제5조(자격) ① 전부(과)를 할 수 있는 자는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기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인자로 한다.

② <삭제 2016.2.3.>

제6조(전부(과)의 제한) 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특기자
2. 편입학한 자

제7조(신청)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1. <삭제 2012.1.31.>

2. <삭제 2007.12.20.>

3. <삭제 2012.1.31.>

제8조(선발) 전부(과) 대상자의 선발은 전입 희망인원이 학부(과) 및 전공별 허용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취득한 성적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15.5.15.)

제9조(과목이수) 전부(과)한 자는 전입 학부(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수과목 인정) ① 이미 취득한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은 전입 학부(과)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7.12.20.)

② 이수과목 중 전입 학부(과)의 학부교양(전공기초)과목 및 전공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은 전입 학부(과)장의 신청으로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전입 학부(과)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재학연한)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중전의 재학연한을 포함하여 8년으로 한다.(개정 2009.12.28.)

제12조(장학금의 제한) <삭제>

제13조(기타)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부(과)할 경우는 교직과정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14조(전부(과)의 예외) 다음 각 호 1의 학생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전(부)과를 허용할 수 있다.

1. 외국인 유학생
2. <삭제 2015.1.1.>

제14조의2(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의 전과)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의 전과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전입 트랙 : 이 학과의 트랙 중 파이데이아창의인재트랙으로의 전입은 가능하나, 글로벌창의인재트랙으로의 전입은 불가함.
2. 전입 자격 : 파이데이아창의인재트랙으로의 전입은 1학년을 이수한(2학기 이수자) 자에 한함.
3. 전출 :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학생의 타과 전출은 이 규정에 따름.
4. 외성트랙 이수자는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파이데이아창의인재트랙 또는 글로벌창의인재트랙으로 전입이 가능하며, 시기 및 방법은 이 규정에 따름.

[본조신설 2015.1.1.]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복학 등에 의하여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이수 학기 수가 동일한 경우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2.28.)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4.29.)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3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5학년도 전부(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9.1.)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부(과) 모집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규정 제4조 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인 2016학년도 2학기 모집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2.1.31.)

11. 재입학에 관한 규정

제정 : 1996. 9. 1

개정 : 1999. 3. 1, 2000. 3. 1, 2003. 3. 1, 2006. 5. 10, 2009. 1. 1, 2012. 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재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자격) ①이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 또는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재입학 원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12.2.22.)

②(삭제 2012.2.22.)

③ 재입학은 원적 학부(과)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2012.2.22.)

④(삭제 2012.2.22.)

제3조(전부(과)의 제한) (삭 제 2000.3.1)

제4조(재입학 인원 및 선정기준) ① 재입학은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정원내, 정원의 구분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원내, 정원의외) (개정 2006.5.10)

② 계열별 학생정원 초과 시 평점평균 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6.5.10)

③(삭제 2012.2.22.)

제5조(수업연한 등) (삭제 2012.2.22.)

제6조(등록금)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8개 학기 이상 수강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우리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1.1.)

③ 등록을 하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절차를 밟지 않아 제적된 후 1년 이내에(군입대 기간 제외) 재입학 허가된 자의 경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대체인정한다.(신설 2009.1.1.)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재입학 대상자도 이 규정에 의한 재입학 대상자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의 학과 제적자는 변경된 학부(과, 계열, 전공)의 제적자로 본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이전에 시행한 부분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1.1.)

-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재입학 대상자도 이 개정규정에 의한 재입학 대상자로 본다.

부 칙(개정 2012.2.22.)

- ①(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사경고로 제적된자의 재입학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1학기 이전에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제적 후 1학기 이상 경과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12. 교직과정운영규정

제정 : 1989. 9. 1.

개정 : 1992. 3. 1, 1994. 11. 15, 1997. 3. 1, 2001. 3. 1, 2002. 3. 1, 2002. 10. 1, 2004. 3. 1, 2005. 6. 28, 2005. 12. 27, 2008. 2. 27, 2009. 12. 28, 2010. 12. 28, 2011. 12. 30. 2014.10.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 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과정 이수자)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 및 정원은 교육부의 승인결과에 따른다.(개정 2014.10.28.)

제3조(교원양성위원회)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며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직과정 이수신청)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2학년 소정의 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2014.10.28.)

②(삭제 2010.12.28.)

제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육부의 승인인원 내에서 제2학년 제1학기 또는 제2학기 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성적과 적성·인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개정 2010.12.28. 2014.10.28.)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해당 학부(과) 최초 신

입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되, 선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12.28.)

③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전체 선발인원은 제3학년 제1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개정 2010.12.28. 2014.10.28.)

제6조(이수기준)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이수과정표에 따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학부(과)별로 지정되어 있는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③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주전공의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을 학부(과)별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④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부(전공)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목 외에 제11조에 따라 산업체현장실습을 2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⑤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직소양영역의 인성교육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특강으로 실시하고, 4회(8시간) 이상 이수 시 P(Pass)로 인정한다. 단, 인성교육은 제9조의 평균 성적 및 수강학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는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28.)

제7조(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중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학부과정(대학)에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하다.

제8조(복수전공)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다른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를 교직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부(과)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 중에는 복수전공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직복수전공은 제2학년 소정의 기간에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8.)

④ 제3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제3학년 제1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⑤ 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는 수강신청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9조(이수과목의 성적)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성적 환산은 교과목별 실점수에 취득 학점을 곱하여 총 취득 학점으로 나눈다.

[전문개정 2014.10.28.]

제10조(교육실습) ①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편성한다.

② 학교현장실습은 제4학년 제1학기 중 4주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교직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하며,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한다.

④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산업체 현장실습) ①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예정자(복수전공자 포함)는 3학년 또는 4학년 방학 중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2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의 범위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이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은 산업체로 한다.

③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세부계획은 해당 학부(과)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교직과정 이수포기)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중도에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를 교직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습경비) 학교현장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요건을 갖춘 자는 제4학년 제2학기말(후기 학위 취득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6월중) 소정의 기간 중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직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학적 변동자 교직이수 기준) 복학생 및 재입학 학생의 교직이수 기준(이수학점 및 기본 이수과목 등)은 졸업학년도 재학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교직전담교수) 학부(과)에 교직전담교수를 임명하여 교육실습학교 배정, 현장방문지도, 교육봉사활동 등을 관장하게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0.28.]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표시과목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12.28.)

-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개정전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위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및연구법)을 이수한 경우 전공인정학점 속에 포함할 수 없으며, 교직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10.12.28.)

-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개정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절차 변경 사항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2010학년도 입학자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 입학자(201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2학년 2학기 말에 실시하며, 2학년 재학자 중 신청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자 중에 선발하되, 선발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개정 2011.12.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0.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13.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정 : 1997. 9. 1

개정 : 1999. 3. 1, 2000. 2. 1, 2002. 2. 9, 2004. 2. 1, 2004. 10. 7, 2007. 2. 28, 2011.1.31, 2011.6.7.

제1장 총칙(신설 2011.6.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 및 제63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등록금은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으로 구분한다.

제2장 등록금의 납부(신설 2011.6.7.)

제3조(납부방법) ① 등록금은 학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신입생, 재입학생, 편

입생)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 인정한다.(개정 2011.1.31.)

- 1. 수업일수 1/4이전 : 등록금 전액
- 2. 수업일수 1/4경과 후 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 등록금의 2/3
- 3. 수업일수 1/3경과 후 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 등록금의 1/2
- 4. 수업일수 1/2경과 후 :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 이전에 병역 사유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한다.(개정 2011.1.31.)

⑤ 8학기이상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미 졸업자가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여야 한다.

-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 1/6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 1/3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7학점부터 11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 4. 12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기일) ① 등록금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 개시 10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입학(편입학을 포함)의 납부 기일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징수금액) 징수금액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1.1. 31.)

제6조(면제·감액) 등록금은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장 등록금의 반환(신설 2011.6.7.)

제7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1.1.31.)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학포기각서 제출일기준)
3. 재학 중인 자와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자퇴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일, 휴학 중인 자는 등록한 학기의 휴학일 기준)(개정 2007.02.28)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한 학기의 휴학일 기준) (신설 2011.1.31.)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사망은 사망진단서상 사망일, 천재지변은 사건발생일 기준)

제8조(등록금 반환기간) 등록금 반환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징벌) 등록금 전액 또는 분납의 잔액을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가산금 등) ① 등록금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하며 과오납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당한 자의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 2011.6.7.)

제11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학교 교직원 3인, 학생대표 3인, 관련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이 들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 1인을 포함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및 관련전문가, 학부모 또는 동문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대표는 총학생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별도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위 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 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및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5장 기 타(신설 2011.6.7.)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 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6.7.>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 행이전에 이루어진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등 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등록금 반환 기준(제7조2항관련)(개정 2011.1.31.)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1.31.)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1.1.31.)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14. 조기졸업운영규정

제정 : 1990. 1. 1.

개정 : 1992. 3. 1. 1997. 9. 1, 2000. 3. 1, 2004. 2. 1, 2005. 6. 28, 2006. 11. 14, 2009. 12. 28, 2012. 1.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9조(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자격) 조기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해당자
2. 6학기 이상 이수자로 총 평점평균이 4.3이상인 자(개정 2006.11.14.)

제3조(신청 자격)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시 5학기 또는 6학기를 마친 자로 총 평점평균이 4.3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06.11.14.)

제4조(신청절차)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 희망 학기에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기 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2.1.31.)

제5조(학적부 기재 등) ① 조기 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이라고 기재한다.

② 조기졸업신청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조기졸업의 제한) 이 대학교에 편입학한 자는 조기졸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이전 학생도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이전의 대상 학생도 이 개정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 본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복학 등에 의하여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이수학기 수가 동일한 경우 1997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신청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116학점(법학부 124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졸업자격 및 신청자격 총 평점평균 상향에 대한 경과조치) 조기졸업자의 졸업자격 및 신청자격 중 총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개정된 총 평점평균 4.3이상으로 한다.
2. 2006학년도 입학자는 총 평점평균 4.2 이상으로 한다.
3.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의 총 평점평균 4.0 이상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9.12.28.)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3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삭제 2012.1.31.)

III. 학생규정

1.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

제정 : 1992. 3. 1.

개정 : 1993. 4. 1, 2011. 5. 1, 2013. 1.23, 2014. 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시험(기말, 중간) 기타 학습평가를 위한 일체의 시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무효로 한다.

1.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에 불응한 자
2. 금지된 교과서, 노트, 자료, 기타 참고서를 보거나 보고자 하는 자
3. 타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고자 하는 자
4. 전 각호의 행위를 방조한 자
5. 기타 감독관이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처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당해 학기 전 과목 학점을 무효로 하고 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대리시험의 청탁자와 수탁자
2. 전 호의 행위를 방조한 자
3. 기타 감독관이 심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확고한 심증을 가진 자
4. 부정 자료의 사용 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한 자

제4조(처벌상선)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복지처장은 학생 상벌규정에 의거 처리한다.(개정 2011.5.1., 2013.1.23.,2014.5.14.)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타규정개정 2011.5.1.)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5.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학생단체활동에 관한 규정

제정 : 1982. 3. 1.

개정 : 1984. 3. 1, 1993. 4. 1, 1998. 3. 1, 2004. 2. 1, 2012. 2. 6, 2013. 1.23, 2014. 5.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 학칙 제53조에 의한 자치활동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정신을 함양하고 아울러 학원내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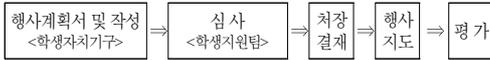
제2조(의의)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과학생회 및 동아리에서 주관하는 축제, 사회봉사활동, 학술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등 제반 학생활동이 본 대학교의 건학 이념 및 교육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지원하는 업무이다.

제3조(주관 부서) 학생복지처 산하 학생지원팀(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제4조(업무 시기) 연중

제2장 업무 내용 및 절차

- 제5조(지원업무) ① 각종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및 단체는 행사계획서를 행사개최 20일전까지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에 제출한다.(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 ② 제출된 계획서를 행사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 ③ 학생복지처장의 결재 후 그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다.(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 ④ 행사 진행시 현장에 참석하여 지도를 한다.
- ⑤ 행사 종료 후 행사주최단체와 정산 및 그 행사에 대한평가를 한다.
- ⑥ 업무 흐름도(개정 2012.2.6, 2013.1.23.)



- 제6조(등록) ① 이 대학교 학생으로서 조직되는 동아리 기타의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복지처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 ② 신규등록은 매학기 초에 하며 기 등록된 동아리 및 단체도 학년 초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등록기간은 학생복지처장이 제2학기 초에 공고한다.(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 제8조(보고사항)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학생복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 제9조(활동허가) 단체활동을 위하여 집회 또는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0조(승인사항)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공고문, 기타의 인쇄물을 부착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는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6, 2013.1.23., 2014.5.14.)
- 제11조(일시적인 행사) 제2조에 의한 단체 활동이 아닌 학생의 일시적인 집회와 행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처벌) 이 규정에 위배되는 학생단체활동은 학칙에 의하여 처벌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타규정개정 2011.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5.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학생 상벌 규정

제정 : 1993. 4. 1.

개정 : 1998. 3. 1, 2005. 11. 8, 2007. 12. 20, 2012. 5. 22, 2013. 1.23, 2014. 5.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의한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2장 상벌위원회

제3조(구성) 삭제 (1998. 3. 1)

제4조(의결) 삭제 (1998. 3. 1)

제5조(심의) 삭제 (1998. 3. 1)

제3장 포 상

제6조(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 1. (학업상)(개정 2007.12.20., 2012.5.22.)
 - 가. 재학 4년간의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자와 각 대학에서 최우수한 자, 각 학부(과)에서 최우수한 자
 - 나. 재학 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2. (체육상) 체육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3. (문화상) 문화 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4. (공로상)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 5. (선행상, 효행상) 학생이 학부형 또는 타인에게 선행과 효행이 뛰어나 대내·외적으로 모범이 되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 6. (특별상) 교외에서 상을 받은 자
 - ② 재학생 중 매학기 선행,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학장상을 수여한다.(신설 2012.5.22.)

제7조(시기) 졸업예정 학생은 졸업할 때, 그 외는 필요할 경우 시상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정한다.(개정 2012.5.22.)

- 제8조(자격) ① 전 교과목성적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품행이 방정한 자이어야 한다.
- ③ 특별한 경우와 규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발의)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한다.(개정 2005.11.8. 2012.5.22.)

- 1. 학부(과)장 또는 학생복지처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5.22, 2013.1.23, 2014.5.14.)
- 2. 기타 공적 입증자료

제4장 징 계

제10조(대상) 이 대학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2.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 3. 타 학생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한 학생
- 4. 학내외에서 불법적인 정치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한 학생
- 5.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
- 6. 불법 시설물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의 불법점거, 불법사용, 불법대여 행위를 한 학생
- 7.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 8.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학생
- 9. 신문, 방송, 출판물 또는 기타 게시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날조, 유포함으로써 학교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10. 교내에서 허가된 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학생
- 11.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12. 성폭력 행위를 한 학생
- 13. 그 밖에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전문개정 2005.11.8.)

제11조(구분) 학생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5.22.)

제12조(징계기간) 근신은 7일 이내, 유기정학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근신) (삭제 2005.11.8.)

제14조(정학) (삭제 2005.11.8.)

제15조(제적) (삭제 2005.11.8.)

제16조(징계의 상정) 이 규정 제10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이 위원회에 발의한다.(개정 2005.11.8.)

2012.5.22.)

제16조의2(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1.8.>

제16조의3(징계의결요구서의 송부 및 소명) ① 위원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주일 이내에 징계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대상 학생이 속한 학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당해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 학생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 대상 학생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대상 학생이 제1항의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출석 및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대상 학생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당해 학부(과)장은 징계 대상 학생의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11.8.>

제16조의4(징계의결) ① 학생징계에 관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1.8.>

제16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 학생, 당해 학부(과)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1.8.>

제16조의6(재심) ① 징계를 통보 받은 당해 학생은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

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학생은 재심청구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학부(과)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하도록 한다. 재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내지 제16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5.11.8.>

제16조의7(징계의결의 확정 및 집행) ① 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심의 청구가 없이 제16조의6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징계혐의학생이 재심을 포기한 때, 그리고 재심 의결이 있을 때 확정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확정된 때에는 사유가 없는 한 1주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1.8.>

제17조(승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징계 해제) ① 무기정학의 경우, 학부(과)장이 지도한 결과에 따라 당해 학생에 대한징계해제건의서를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심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기간의 만료로 해제한다.

제19조(효력) ① 근신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근신 기간 중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 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②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개시일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20조(통보) 포상은 공개, 징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징계사실을 당해 학생 소속 대학장 및 학부(과)장, 해당행정부서, 보호자,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21조(적용) (삭제 2005.11.8.)

제22조(감면 및 사면) ① 총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근신 처벌을 받은 학생이 개선의 정이 현저하고 학생이 타의 모범이 될 경우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사면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3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상벌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5.22.)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5.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성폭력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 : 2000. 4. 17.

개정 : 2004. 9. 1, 2011. 5. 1, 2011. 12.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2.30.)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 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행위
2.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5.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2.3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행위(신설 2011.12.30.)
2. 교육현장 및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폭력 행위(개정 2011.12.30.)
3.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 및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개정 2011.12.30.)
4. 기타 상대방의 자긍심을 손상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성폭력 행위(개정 2011.12.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소속하는 교원 및 직원,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에 적용한다.

②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외국인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하며, 직원이라 함은 사무직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또한, 학생이라 함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및 교환학생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석·적용한다.

④ 이 규정은 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로 적용하며, 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후 가해혐의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인 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폭력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징계절차 등에 참여한 자는 피해 주장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령, 용모, 사진,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개정 2011.12.30.)

제5조(가해혐의자 보호) ① 가해혐의자는 징계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3조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주장자 및 학교구성원은 누구라도 당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인신공격 및 게시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학교의 의무) 학교는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육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폭력 행위의 예방

제7조(상담업무) 학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를 예방·교육하고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보고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에 성폭력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실을 둔다.

제8조(관련업무) 상담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폭력 피해사건의 신고 및 접수·조사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5.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30.>

제9조(구성)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 명의 상담위원을 둔다.

1. 상담실장과 상담위원은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상담실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상담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실에 성폭력예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1/2과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학생취업복지처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대표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5.1.)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에게 부득이 한 불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실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2. 성폭력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3. 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개정 2011.12.30.)

4. 기타 성적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직원 중에서 간사를 위촉하여 회

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상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의 구제 및 처리

제12조(신고) ①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담실에 그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학생취업복지처장(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12.30.)

제13조(조사) ① 피해주장자가 상담을 원할 뿐 조사 및 구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상담실장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② 피해주장자가 조사 및 구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총장은 보고 받은 즉시 조사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 상담실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개정 2011.12.30.)

②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12.30.)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피해주장자 또는 가해혐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한하여 조사위원장은 1인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장은 당해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조사요청기한) 성폭력을 원인으로 한 구제 청구는 성폭력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의 제공) 성폭력 조사위원회는 전조의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절차에 따라 총장에

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조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총장은 제3조가 정하는 각 신분에 따라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구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조사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처분절차) ① 총장은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종결한다.

②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③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④ 금전적 피해보상

⑤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⑥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전문개정 2011.12.30.>

제18조(피해구제지원)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 제2조가 정하는 성적자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학생상담실장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사항
-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이 학교 정관 및 학칙상의 처리 절차
-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또는 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행위
- 4. 기타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제4장 처 분

제19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교원의 징계종류 및 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무직원에게 대한 징계종류 및 직원인사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칙 제11장 및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상담실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실명 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실명사과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3. 사회봉사 프로그램

4. 금전적 피해보상

⑤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4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성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 30.>

제20조(징계이외의 처분)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제2조에서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부가하여 명할 수 있다.

1.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결과를 교내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할 것을 명하는 일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 사과하도록 명하는 일
3. 성폭력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경고처분을 명하는 일

제21조(방조자 등에 대한 징계) ① 성폭력 행위를 방조하여 행한 자는 가해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② 총장은 가해행위 후 가해혐의자와 음모하여 피해주장자 및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자도 징계위원회 또는 학생 지도위원회에 그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조 또는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자에게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허위사실의 신고 및 유포자) ①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상담실에 신고하거나 교내외에

유포한 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정상참작)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 행위를 범한 자가 조사 착수 전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보일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타규정개정 2011.5.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학위수여현황

동아리현황

동문회 회칙

대학행정서비스현장

해외자매대학 및

학점교류 대학 현황표

I. 학위수여현황

1. 대학

가. 학사학위 현황

학년도	문학사	법학사	정치학사	경영학사	경제학사	공학사	이학사	체육학사	무역학사	국제통상지역학사	국제비서학사	사회복지학사	글로벌인재학사	경찰행정학사	계
1985	193			29	16										238
1986	302	29		41	15	23									410
1987	406	24	25	59	25	27									566
1988	550	24	28	83	43	24									752
1989	671	27	37	90	55	40									920
1990	658	37	47	80	37	43									902
1991	933	43	37	73	27	45									1,158
1992	864	40	46	90	47	62	46								1,195
1993	901	42	39	74	55	63	45	25							1,244
1994	916	38	35	62	64	60	57	19							1,251
1995	889	29	37	74	76	60	62	21							1,248
1996	967	27	25	87	73	76	77	38							1,370
1997	790	75	29	102	71	64	61	40							1,232
1998	976	75	31	157	79	82	69	25							1,494
1999	975	79	37	138	81	119	51	31							1,511
2000	938	88	37	219	100	151	77	44							1,654
2001	1,113	99	37	223	79	151	84	37							1,823
2002	1,105	81	37	198	105	124	68	50							1,768
2003	1,138	85	29	212	76	181	57	48							1,826
2004	1,084	68	17	221	87	173	51	55							1,756
2005	992	103	42	228	100	195	63	42							1,765
2006	925	80	24	187	100	202	48	50							1,616
2007	904	76	33	170	21	202	46	61	68		1				1,582
2008	966	75	24	159	23	191	45	61	64		22				1,630
2009	1,000	52	24	154	52	117	14	62	67	21	37				1,600
2010	1,157	72	34	217	67	112	8	57	81	75	49	21			1,950
2011	1,088	71	22	155	55	99	19	54	71	61	51	19			1,765
2012	1,013	51	27	149	39	68	14	54	59	78	51	29			1,632
2013	1,028	65	31	170	46	71	22	56	67	90	63	32	4	0	1,745
2014	1,093	20	40	127	45	78	13	44	49	114	39	42	8	40	1,752
2015	1,169	24	36	164	45	83	18	45	61	120	41	28	5	40	1,879
계	27,704	1,699	947	4,192	1,804	2,986	1,115	1,019	587	559	354	171	17	80	43,234

2. 대학원 학위수여·수료현황

학위종별 학위구분	문 학	법 학	지역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공 학	체육학	한국학	영어 교육학	교육학	국제 지역학	언어학	계
석사과정	228	31	21	13	8	2	67	63	50	3	114	12	1	613
박사과정	63	7	4	-	7	-	8	12	0	2	16	1	0	120

3.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현황

전공별 학위과정	국어 교육	영어 교육	독어 교육	일어 교육	한국어 교육	일반사 회교육	역사 교육	상업정 보교육	수학 교육	정보컴퓨 터교육	체육 교육	계
석사과정	189	289	12	135	74	96	7	35	163	76	176	1,252

4. 국제통상경영대학원 학위수여 현황

전공별 학위과정	국제 경영	국제 무역	경영 정보	국제 법무	아주 지역	동북 아 지역	동남 아 지역	중동· 중앙 아 지역	북 중 미 지역	아 시 아 오 세 아 니 아 지역	북 중 미 유 럽 지역	아 세 안 통 상 경 영	중 동 경 영	중 국 지 역 통 상 경 영	아 세 안 지 역 통 상 경 영	계
석사과정	53	13	13	2	6	3	2	1	1	7	1	3	1	64	5	175

5. 통역번역대학원 학위수여 현황

학위구분	전공별	한영전공	한일전공	한중전공	계
석사과정		86	61	52	199

6. TESOL대학원 학위수여 현황

학위구분	전공별	TESOL 전공	계
석사과정		120	120

II. 동아리현황

분과	동아리명	회원수	등록년도	주요 활동 내용
공연·문화 분과	미네르바	32	84. 7	(건전가요 보급 육성) 봄, 가을 정기발표회
	발모아	43	84	정기공연, 각 대학가요제 Rock Festival 및 Contest등
	새야새야	51	84. 3	(락밴드 활동) OT공연, 대동제 공연, 정기공연 및 교외행사 공연
	카텐차	43	2003	학과행사 초청공연, 정기발표회, 대동제 공연, 길거리 공연, 매주 교내 공연
	팔분음표	86	87. 7. 10	(통기타음악외 모든장르 음악) 정기발표회, 10주년 기념발표
사회·체육 분과	ACE	45	84. 3	재부대회참가, 총장배 농구대회 개최, 전국대회 참가 부경대 주최 대회참가
	Kill-SMASH	20	83	정기월례대회, 외성테니스대회 각종 재부대학 테니스대회
	토네이도	38	92. 7. 7	부산지역 춘계리그 참가 예정
	파라다이스	50	82	(야구를 통한 심신 단련) 피닉스대회참가, 영남리그참가
	파이오니아	34	82. 3	(축구를 통한 심신 단련) 총장배 축구대회 개최 예정
스포츠·체육 분과	텐핀	141	2004	부산시 재부 대학 경기 출전, 주1회 정기 불링 연습
	공수도	43	98	공수도 전국대회 참가, 공수도 국가 대표선발대회참가, 승단취득 및 연수, 권격도대회 참가, 세계선수권대회
	동그라미	58	86. 3. 5	(탁구를 통한 심신 단련) 남부리그, 재부리그 참가
	무향	53	93. 9. 5	수련(연합수련포함) 및 학교행사(동아리연합행사포함)참여
	외검회	31	98	부산 시장기 검도대회, 재부연합검도대회, 영남검도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

분야	동아리명	회원수	등록년도	주요 활동 내용
예술·활동 분과	M.A.P	15	2001	대학 중요행사 초청댄스 공연, 외부행사 초청댄스 공연
	신바람응원단	11	98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응원활동
	채플린	32	87. 9. 10	(대학인의 건전한 웃음추구) 년2회 정기공연
	HOW	22	2015. 6.	합창을 통한 대학 행사 및 다문화 행사 초청공연, 동아리 자체공연
	한국 예술 연구회	24	82. 5. 10	정기공연 2회 및 신입생 워크샵 1회
전시·문화 분과	노을	31	85. 4. 28	사진예술 봄·가을 정기 전시회, 재부 전시회, 주말 촬영
	두레박	37	89. 9. 1	(만화작회) 전시회, 집단창작집
	목음문학회	21	82. 9. 17	작품전시회와 시낭송회
	아뜨리에	24	85	(순수미술) 봄·가을 미전, 재부 미전
	알음알이	21	83. 9. 20	(시창작과 문학연구) 시낭송회, 문학의 밤, 시화전
특수 활동 분과	IVF	17	2001	전국, 부산지역 IVF 정기행사 참여
	여럿이함께	111	92. 4. 10	(사회복지, 사회봉사 활동) 지속적인 재학생 정기 방문 및 봉사활동
	차코	25	2015. 6	차이나타운문화축제, 한중 우호의 밤 참가
	챌린저	39	85. 3	(수중답사와 정화활동) 개해제, 개강, 축제, 종강다이빙
학술 문화 분과	A.L.A	21	86. 5. 5	재부연합스터디, LISTENING CONTEST 개최
	NHK방송 연구회	43	88	일본방송을 통하여 우리문화와 일본문화를 비교하여 다른 점과 공통점에 대해 논의함, 학술세미나, 일본문화제 개최
	O-RM	24	08. 3. 7	언어 교수법 연구 및 다국어 및 문화 튜터링 동아리
	TIME	32	82	TIME지 발표를 통한 시사상식과 영어실력의 향상, 회원 간의 친목도모

III. 동문회 회칙

第一章 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모교발전·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설치한다.

1. 본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시·도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단위동문회(학과별, 국내외지역별, 직능별, 자랑스런의성인상수상자회, 기타 소모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사업
2.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4. 본회의 재정확충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第二章 會員

제5조(회원구분·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각 대학 및 각대학원을 졸업한자 및 국제 최고경영자과정(수료한자 또는 본 대학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2.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으나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중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많은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모교교수,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나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단에서 추천한 자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선임과 임기) 본회 회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모교총장 또는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운영 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회장과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② 회장이 결원일 때에는 보선하지 않고 수석부회장·부회장 중 선학번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관장한다.
 -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규정에 의해 선출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및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⑥ 사무총장은 회장이 사무국장 및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⑦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연직 사무국장은 각 단위별 총무단에서 1명씩 선임된 자로 한다.

⑧ 간사는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단 : 약간명

③ 회 장 : 1인

③ 수석 부회장 : 1인 이상

④ 사 무 총 장 : 1인

⑤ 부 회 장 : 30인 이내

(단, 당연직 부회장은 단위동문회별 회장의 수로 한다.)

⑥ 운 영 위 원 : 약간명

⑦ 감 사 : 2인

⑧ 국 장 : 사무국장과 각 단위별 총무단에서(각 1명씩)선임된 자

⑨ 간 사 : 동문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수

제9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 석 부 회 장 :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 회 장 : 수석부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중 선학 번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사 무 총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5. 사 무 국 장 : 회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6. 간 사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를 지원한다.

7. 고 문 단 :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8. 감 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三章 會議

제10조(회의) 본회에 총회·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12월 중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부회장 5인 이상 및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고)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임시총회는 회장이 회의개최일 10일전, 동문홈페이지, 서면, e-mail 등으로 공고하여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회의의 정족수) 총회는 5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는 적용하지만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승인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예산·결산의 승인
3. 회칙개정
4.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사무국장 및 회장이 추천한자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정기총회 개최일시
- ② 총회의 위임사항
- ③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 ④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 ⑤ 입회비와 일반회원 연회비
- ⑥ 지역·직장·기타동문회 설치 승인
- ⑦ 고문 추대
- ⑧ 직원의 정원과 보수책정
- ⑨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안건
- ⑩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⑪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제16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단위별 회장(총무)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본회의 중

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 ②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총회의 위임 사항
 -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
 - ⑤ 명예회원 추대
 - ⑥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⑦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제17조(의사록 작성) 총회·운영위원회·이사회 의 결사항에 관한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둔다.

제18조(사무국)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문회 사무국을 둔다.

- 1.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2. 사무국장 및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第四章 會計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입회비
- 2. 회비
- 3. 찬조금
- 4. 보조금
- 5. 수익사업 수익금

제22조(회비)

- 1. 본회의 회비는 일반회원회비, 임원회비, 단위별 동문회 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2. 입회비와 일반회원·지부 및 단위동문회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고 문: 50만 원 이상
 - ② 회 장: 200만 원 이상
 - ③ 수석 부회장: 100만 원 이상
 - ④ 부 회 장: 50만 원 이상
 - ⑤ 감 사: 10만 원 이상
 - ⑥ 당연직부회장: 10만 원 이상
- 4. 회비납부는 회계연도 2월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표창) 본회 및 모교를 위하여 큰 공이 있는 동문, 본회의 회원으로서 직계 2대가 모교를 졸업한 가족 또는 동일 호적부상 5인 이상 모교를 졸업한 가족에게 포상한다.

제26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第五章 慶弔事

제27조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자 격: 총동문회 임원진 및 단위별 동문회 임원진에 한한다.
(범위는 직계에 한한다.)
- 2. 경조비: ①총동문회기 설치
- 3. 경조비: ②조화 또는 경조비 20만원 이내에서 지출한다. 단, 일반 정회원의 요청 시 총동문회기는 비치할 수 있다.

第六章 附則

제28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87년 4월 5일
- 개정 1995 12월 12일
- 개정 2002년 1월 12일
- 개정 2007년 1월 13일
- 개정 2009년 6월 11일
- 개정 2011년 5월 25일

제29조(경과조치) 본 회칙 전에 시행된 종전회칙에 시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IV. 대학행정서비스현장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원은 우리대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성·탐구성·전문성을 겸비한 국제전문인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교수의 강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수요자 편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 대학의 발전과 교육, 연구, 학생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항상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대학 정책에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민원 관련 업무는 친절·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만족하지 못한 사항은 신고 즉시 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실천 항목』을 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공통 실천 항목

1. 우리는 민원인이 방문하면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 하겠으며,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2. 모든 직원은 항상 단정한 복장과 신분증(명찰)을 착용하고 밝은 표정과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3.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누구임을 알려주고, 민원인의 인적 사항과 용건 등을 메모해서 담당자가 1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사무실 담당자 앞에는 담당자 성명 및 담당 업무가 표기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민원인이 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대학 홈페이지(<http://www.bufs.ac.kr>) 게시판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1일 2회 답변을 하겠습니다.(오전에 질의된 사항은 오후, 오후에 질의된 사항은 익일 오전에 답변)
6. 휴무일의 당직근무는 민원인의 방문 및 전화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 휴일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민원 관련 실천 항목

1.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은 자동발급기, 창구 신청, FAX민원 신청, 우편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화 신청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 등록금 고지서 발행은 방문하실 경우 즉시 발행하여 드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재발행 신청을 할 경우 1일 2회 조회를 통하여 원하는 주소지로 신속히 발송하겠습니다.
3.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등 해당부서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명서는 즉시 발급해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1시간 이내에는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머리, 손가락, 볼펜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불친절한 사항은 051-509-537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체 점검을 통하여 시정하고 담당자를 재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화 통화와 관련한 실천 항목

1. 전화는 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2. 전화를 받으면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출장, 교육 등 그 사유를 알려드리고, 다른 직원이 담당자가 누구임을 안내하며, 민원인의 인적 사항과 용건 등을 기록하여 30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인과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전화를 받은 경우 민원인이 동일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직원이 담당자에게 10초 이내에 민원 내용을 알린 후 연결하겠습니다.
5. 용무가 끝나면 민원인이 전화를 끊은 후 수화기를 놓겠습니다.
6. 전화는 얼굴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7. 전화를 하했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쾌하였을 경우에는 총무팀장 051-509-5371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를 재교육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4. 학사업무 관련 실천 항목

1.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간표를 개인별 고사일, 실시과목, 강의실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겠습니다.
2. 수시로 개편되는 교과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학적 변동 후에도 대체 과목 및 이수과정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3. 교수(시간강사 포함)에게 안내되는 각종 공문을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학사업무를 수시로 파악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당해 학기 주요 학사 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www.bufs.ac.kr>)를 이용, 수시로 정보를 제

공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5. 등록과 관련된 휴·복학시스템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5. 학생지원 관련 실천 항목

1. 학생들이 대학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인 학문 탐구와 인격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회 자치활동과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복지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수업과 관련된 모든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생상담실은 항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지식과 첨단 기법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문제 해결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중앙도서관에서는 신간 자료를 신속히 구입, 정리하고 이용자가 추천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내 우선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상호대차를 이용하여 자료 소장 도서관에 복사 의뢰하여 제공하겠습니다.

6. 학생선발 관련 실천 항목

1. 매년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2. 다양한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제도를 마련하고 학생선발 모집요강을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3. 대학 입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전화나 방문 등으로 입학에 관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정보제공 관련 실천 항목

1. 신규채용, 입찰, 예·결산서 등을 교내 홈페이지 (<http://www.buufs.ac.kr>)에 게재하여 항상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취업정보실에서는 취업 또는 전직 희망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확충을 위하여
 - 업선된 채용 전문 사이트를 링크하고
 - 각종 자격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문사이트를 링크하며
 - 기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사정보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경제신문 사이트를 링크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있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현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 불친절 및 불만족 서비스와 관련한 실천 항목

1.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FAX·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3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담당자의 실수나 착오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사과를 드리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민원인이 협조해 주실 사항

1. 중앙도서관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도서 반납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법규나 규정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할 때에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개진 시에는 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알려 다른 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V. 해외자매대학 및 학점교류 대학 현황표

1. 2+2 해외복수학위취득제도

(1) 개요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 간의 복수학위협정에 따라 우리대학에서 2년, 외국교류대학에서 원칙상 2년을 수학한 후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양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2) 특징

- 가.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에서 상호 학점인정으로 두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나. 외국교류대학 교환학생에게 외국교류대학의 학비 면제혜택이 주어진다(일부국가 제외).
 - 다. 외국교류대학 파견학생에게 장학금과 보험료 등의 장학지원혜택이 주어진다.
 - 라. 영어권 복수학위과정 외성트랙을 운영하여 미국의 교양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수업을 제공한다.
- ※ 외국교류대학에서의 수학연한은 학생개인의 능력, 학사제도 차이 및 전공선택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3) 등록금 및 장학금

- 우리대학-외국대학간 교환학생의 동수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교 등록금만 납부
- 동수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 파견일 경우 본교 등록금 및 외국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학기당 장학금 지원

※ 복수학위 해외파견 장학금

상대교 납부금액		1인당 장학금	지급조건
3,754 USD 초과	일정액 지급	3,754 USD	외국대학에서의 성적이 3.0/4.5 이상을 유지할 경우
3,754 USD 이하	\$3,000초과~\$3,754이하	3,000 USD	
	\$2,500초과~\$3,000이하	2,500 USD	
	\$2,000초과~\$2,500이하	2,000 USD	
	\$1,500초과~\$2,000이하	1,500 USD	
	\$1,000초과~\$1,500이하	1,000 USD	
	\$1,000이하	700 USD	

(4) 지원자격

- 영어권

구분	미국대학	영국대학	호주대학
지원자격	해당언어 능력을 갖춘 자		
	복수학위과정 외성트랙 4학기 이수자		4학기 이상 수료자 (외성트랙 이수자)
	평점평균 3.0 이상		
파견시기	매년 8월, 1월	매년 9월	매년 7월, 2월
입학조건	510(PBT)/180(CBT) /64(IBT) /6.0(IELTS) 이상	550(PBT)/213(CBT) /79(IBT) /6.0(IELTS) 이상	

- 기타

구분	중국, 베트남 및 기타지역 대학	일본대학
지원자격	해당언어 능력을 갖춘 자	
	3학기 이상 수료자	4학기 이상 수료자
	평점평균 2.5 이상	
파견시기	매년 8월	매년 3월
입학조건	지원대학에 따라 신HSK 3급 또는 5급 이상	일본어능력 2급/N2 이상

(5) 선발방법

가. 영어권 복수학위과정 외성트랙

구분	신입생	재학생
지원학과	전 학부(과)	
지원자격	신입생	-1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평점평균 3.5 이상 -공인영어시험성적 소지자 : 토플 47점(IBT), 토익 500점 이상
모집시기	매년 2월 중	매년 2학기 중
선발전형	영어인터뷰 및 필기시험(영어)	
기타	영어권 복수학위제의 경우 반드시 외성트랙을 거쳐야 함	

나. 기타지역

구분	내용
지원 자격	- 3학기 이상 수료하고 평점평균이 2.5 이상 - 교류대학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모집 시기	해당 국가별 선발일정에 따름
선발 전형	서류전형 및 해당언어 인터뷰

(6) 선발과정

: 서류전형(지원서, 어학성적, 성적증명서) → 면접 및 최종선발(해당학과 및 국제교류센터) → 외국 대학 입학신청 → 입학허가서 수령 → 비자발급 → 외국대학 파견

2. 해외장·단기수학제도(3+1, 7+1)

(1) 개요

외국 협정체결 대학에서 휴학 없이 1년 또는 1학기 동안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2) 등록금 및 장학금

- 우리대학-외국대학간 교환학생의 동수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교 등록금만 납부하면 파견됨
- 학생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대학 모두 등록금 납부.

단, 학기당 지원금 700 USD이 지원됨.

- 본교 파견생 해외여행자 전원 보험료 일부 지원

(3)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지원서, 수강계획서, 성적증명서) → 2차 면접 → 예비 합격자 발표

(4) 상담문의 : 국제교류팀 051)509-5322(영어권), 5325(중국), 5324(일본), 5327(베트남), 5323(기타지역)

3. 해외영어학기제(SAP)

(1) 개요

해외영어학기제(SAP: Semester Abroad Program)는 미국, 캐나다, 호주, 몰타, 말레이시아 등 해외 자매 대학에서 1학기 동안 영어습득과 현지 체험을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영어능력 제고와 글로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등록금 및 장학금 :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총 소요경비 중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학점인정 : 현지에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된다. 단 영어 전공자(복수, 부전공 포함)일 경우 영어 전공학점으로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4) 선발방법 : 설명회(4월, 10월 예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예비합격자 발표 → 오리엔테이션

4. 해외교류프로그램 교류현황

(1) 2+2 해외복수학위취득제도

[2016학년도 2학기 누적파견기준]

연번	국가	대학명	Out	In
1	미국	세크라멘토주립대	3	0
2	미국	센트럴미시간대	6	0
3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	5	0
4	미국	트로이대	7	0
5	베트남	하노이사범대	38	18
6	베트남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	0	17
7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28	8
8	영국	브래드포드대	13	0
9	일본	간사이외대	1	0
10	일본	나가사키외대	4	4
11	일본	나고야외대	1	0
12	일본	레이타쿠대	5	0
13	일본	바이카여대	2	0
14	중국	광둥백운대	0	13
15	중국	광둥외어외무대	0	0
16	중국	길림대 주해캠퍼스	0	11
17	중국	길림화교외대	0	13
18	중국	대련민족대	0	8
19	중국	대련외대	0	8
20	중국	북경외대	6	0
21	중국	사천외대 성도대	0	4
22	중국	상해외대	1	0
23	중국	연대대	0	10
24	중국	월수외대	0	2

연번	국가	대학명	Out	In
25	중국	중남임업과학기술대	0	8
26	중국	월수외대	0	2
27	중국	절강수인대	0	5
28	중국	친진외대	4	1
29	중국	친진외대 빈해외사대	0	26
30	태국	씨나카린위룻대	1	0
31	호주	퀸즈랜드대	3	0
합계			128	156

(2) 해외장·단기수학제도(3+1, 7+1)

[2016학년도 2학기 누적과건기준]

연번	국가	대학명	Out	In
1	대만	국립가오슝대	1	1
2	대만	국립정치대	2	0
3	대만	동오대	2	0
4	대만	웬자오외대	2	6
5	대만	중국문화대	2	3
6	독일	바이로이트대	8	1
7	독일	본대	2	1
8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대	2	49
9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라드언어대	6	0
10	러시아	모스크바언어대	5	2
11	러시아	부랴트국립대	4	2
12	러시아	사할린국립대	5	4
13	러시아	우랄연방대	2	0
14	러시아	이르쿠츠키기술대	1	0
15	러시아	카잔연방대	6	0
16	러시아	페름국립대	1	1
17	러시아	푸쉬킨언어대	1	0
18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4	0
19	말레이시아	술탄이드리스교육대	4	4
20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14	2
21	멕시코	나야릿대	0	2
22	멕시코	멕시코국립대	5	0
23	멕시코	인터콘티넨탈대	21	0
24	몰타	몰타대	2	0
25	미국	랜더대	1	0
26	미얀마	양곤대	21	0
27	베트남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	0	1
28	브라질	브라질리아대	3	0
29	브라질	상파울루대	2	0
30	브루나이	브루나이국립대	2	3

연번	국가	대학명	Out	In
31	스페인	말라가대	8	0
32	오스트리아	빈대	2	0
33	요르단	요르단대	7	0
34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외대	4	3
35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대	0	4
36	이탈리아	시에나대	1	0
37	이탈리아	페루지아대	4	0
38	인도	네루대	11	3
39	인도네시아	안달라스대	3	0
4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국립대	7	0
41	일본	고치대	2	0
42	일본	교토외대	2	0
43	일본	국제교양대	1	0
44	일본	기비국제대	0	1
45	일본	긴키대	2	0
46	일본	나가사키외대	2	4
47	일본	나고야외대	2	1
48	일본	레이타쿠대	5	7
49	일본	메이카이대	2	0
50	일본	미야자키대	1	0
51	일본	아마구치대	4	1
52	일본	와세다대	4	0
53	일본	후쿠오카국제대	2	8
54	일본	후쿠오카여자대	0	1
55	중국	광둥백운대	0	16
56	중국	광둥영남직업기술대	0	2
57	중국	광둥외어외무대	3	2
58	중국	길림대 주해캠퍼스	4	4
59	중국	길림화교외대	0	4
60	중국	노동대	3	2
61	중국	대련민족대	5	2
62	중국	대련외대	3	5
63	중국	복단대	8	0
64	중국	북경어언대	7	0
65	중국	북경외대	6	0
66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	2	0
67	중국	사천외대	1	5
68	중국	사천외대 성도대	0	3
69	중국	상해외대	6	2
70	중국	상해제2공업대	0	2
71	중국	안산사범대	2	2

연번	국가	대학명	Out	In
72	중국	양주대	0	2
73	중국	연대대	4	0
74	중국	요동대	0	11
75	중국	월수외대	5	1
76	중국	절강수인대	0	2
77	중국	절강외대	3	21
78	중국	중산대	8	0
79	중국	중앙민족대	3	1
80	중국	천진외대	3	2
81	중국	천진외대 빈해외사대	0	2
82	중국	칭화대	9	0
83	중국	하얼빈공정대	5	0
84	중국	흑룡강대	2	2
85	카자흐스탄	구밀요브유라시안국립대학	6	2
86	카자흐스탄	아블라이한국립대	4	3
87	카자흐스탄	알파라비국립대	2	4
88	캐나다	셀커크대	1	0
89	태국	방콕대	2	0
90	태국	씨나카린위롯대	10	7
91	터키	앙카라대	5	2
92	터키	하세테페대	3	0
93	폴란드	아담미츠키에비츠대	1	1
94	프랑스	EMBA	6	0
95	프랑스	이날코대	4	0
합계			343	181

(3) 해외영어학기제도

연번	국가명	대학명	Out	In
1	말레이시아	헬프대	3	-
2	몰타	몰타대	7	-
3	미국	샌디에고주립대	8	-
4	캐나다	셀커크대	12	-
합계			30	-

◆ 해외자매대학 현황표 ◆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1	과테말라	Universidad Francisco Marroquin			○		20100209
2	뉴질랜드	The University of Waikato				○	19961104
3	뉴질랜드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	20110129
4	대만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	○	○	20150326
5	대만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		20090929
6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20151231
7	대만	SOOCHOW UNIVERSITY			○		20160125
8	대만	Wenzao Ursuline University of Languages		○	○	○	20150325
9	대만	I-SHOU UNIVERSITY			○		20160318
10	대만	Chinese Culture University		○	○	○	20150324
11	독일	Bayreuth University		○			20031107
12	독일	University of Bonn		○			19971002
13	동티모르	Universidade Nacional Timor Lorosa'e				○	20090130
14	러시아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			19980224
15	러시아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			20060721
16	러시아	Linguistics University of Nizhny Novgorod		○			20160621
17	러시아	Moscow State Linguistic University		○			19990324
18	러시아	Buryat State University	○	○			20101004
19	러시아	Sakhalin State University		○			20080530
20	러시아	Omsk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			20090909
21	러시아	Ural Federal University		○			20160704
22	러시아	Irkut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			20071018
23	러시아	Kazan Federal University		○			20090506
24	러시아	Perm State University		○			20151103
25	러시아	Pushkin State Russian Language Institute		○			20080407
26	리비아	Garyounis University of Libya			○		20020505
27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	○		20150302
28	말레이시아	University College of Islam Melaka		○			20131129
29	말레이시아	University Pendidikan Sultan Idris(UPSI)		○			20080911
30	말레이시아	Inti International College Penang				○	20051117
31	말레이시아	HELP Institute of Malaysia			○		19970702
32	말레이시아	HELP University College			○		20110718
33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Guadalajara	○	○			20080913
34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Queretaro		○			20160922
35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Nayarit			○		20071016
36	멕시코	Universidad Autonoma de Nuevo Leon			○		20151021
37	멕시코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			20100316
38	멕시코	El Colegio de Mexico				○	20120109
39	멕시코	Universidad Intercontinental		○			20080630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40	멕시코	Universidad de Colima		○			20111230
41	몰타	University of Malta			○		20150109
42	몽골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Education			○		20110620
43	미국	University of Guam				○	20151207
44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20050805
45	미국	Northern Marianas College				○	20121010
46	미국	Lander University		○			20110328
47	미국	Belhaven University				○	20151021
48	미국	Ball State University	○				20080609
49	미국	Biola University				○	20010410
50	미국	San Jose State University				○	20030623
51	미국	San Diego State University		○			20050708
52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				20100430
53	미국	Central Michigan University	○	○			20091214
54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	○			20090818
55	미국	Schiller International University				○	19981126
56	미국	The University of Akron		○	○		20050209
57	미국	Towson University				○	19941029
58	미국	Troy University	○				20080122
59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	20140421
60	미국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	20140919
61	미얀마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Mandalay				○	20140710
62	미얀마	Yangon University				○	20150527
63	미얀마	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			20040614
64	방글라데시	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				○	20151106
65	방글라데시	Southern University Bangladesh				○	20151106
66	베트남	Can Tho University				○	20151204
67	베트남	DANANG UNIVERSITY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20150417
68	베트남	Van Hien University				○	20131201
69	베트남	Saigon College of Art Culture and Tourism				○	20131007
70	베트남	VIET NHAT COLLEGE OF LANGUAGE AND TECHNOLOGY				○	20150622
71	베트남	THAINGUYEN UNIVERSITY		○	○	○	20150710
72	베트남	THAI NGUYEN COLLEGE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20150710
73	베트남	Hanoi University		○	○	○	20131201
74	베트남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9971006
75	베트남	University of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VNU				○	20131004
76	베트남	USSH-VNU Hanoi	○			○	20091126
77	베트남	HAI PHONG UNIVERSITY		○	○	○	20150420
78	베트남	HUTECH University				○	20160330
79	베트남	Ho Chi Minh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0140724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80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Infomaion Technology				○	20131201
81	베트남	USSH-VNU Ho Chi Minh City	○				19970113
82	베트남	HOA SEN UNIVERSITY		○	○	○	20150811
83	베트남	HUE UNIVERSITY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20150420
84	베트남	Hung Vuong University	○			○	20131201
85	베트남	가나다 어학당			○		20131213
86	브라질	University of Brasilia		○			20150522
87	브라질	Universidade de Sao Paulo			○		20100813
88	브라질	Universidade Positivo		○			20121012
89	브루나이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	○	○	20151019
90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			20130718
91	영국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		20091026
92	영국	University of Bradford	○				20121201
93	오만	Korean Cultural Club				○	20160722
94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			20160909
95	요르단	Yarmouk University				○	20090609
96	요르단	University of Jordan		○			20131026
97	우즈베키스탄	Samarkand State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			20050126
98	우즈베키스탄	Uzbek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		○			20040917
99	우즈베키스탄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of Uzbekistan			○		20040409
100	우크라이나	Kyiv National Linguistic University		○			20150518
101	이탈리아	Universita' per Stranieri di Siena		○			20091026
102	이탈리아	Universita' Degli Studi di Catania			○		20091130
103	이탈리아	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			20160930
104	이탈리아	University for Foreigners Perugia		○			20100326
105	인도	Jawaharlal Nehru University		○			20000310
106	인도	University of Delhi		○			19970206
107	인도	Academy for Asia Pacific Studies				○	19970203
108	인도	Atharva College of Engineering				○	20160225
109	인도	Hindustan University		○			20140424
110	인도네시아	Universitas Gadjah Mada				○	20000514
111	인도네시아	Universitas Bung Hatta				○	19960527
112	인도네시아	Pamulang University				○	20140408
113	인도네시아	Universitas Andalas	○	○			20080812
114	인도네시아	Universitas Udayana(University of Udayana)				○	20161003
115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Indonesia		○			20090203
116	인도네시아	Universitas Negeri Jakarta(Jakarta National University)				○	20161019
117	인도네시아	State University of Jakarta				○	20040107
118	인도네시아	Telkom University				○	20151210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119	인도네시아	Universitas Hasanudin			○	○	20120828
120	인도네시아	SMA Muhammadiyah 25 Setiabudi Pamulang				○	20140408
121	일본	Kansai Gaidai University	○	○	○		20060107
122	일본	Koshien University		○			19990313
123	일본	Kochi University		○			20070308
124	일본	Kyot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20080312
125	일본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	○		20130805
126	일본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	20080925
127	일본	Kyushu University				○	20080925
128	일본	Kibi International University		○	○	○	20140526
129	일본	Kinki University		○	○		20130806
130	일본	Nagasaki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	○	20030321
131	일본	Nagoy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	○	20021105
132	일본	Daito Bunka University				○	19940114
133	일본	Reitaku University	○	○	○		20110803
134	일본	Meikai University		○			20010112
135	일본	Musashino University		○	○		20110427
136	일본	Miyazaki University		○			20111216
137	일본	Baika Women's University	○	○	○		20050517
138	일본	Saga Women's Junior College		○		○	20151104
139	일본	Seinan Gakuin University				○	20080925
140	일본	Yamaguchi University		○	○		20141204
141	일본	Oita Prefectural College of Arts and Culture				○	20141008
142	일본	Ochanomizu University		○	○		20160712
143	일본	Waseda University		○			20060425
144	일본	Japan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	20141219
145	일본	Hagoromo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	○			20160714
146	일본	Hosei University		○	○		20151224
147	일본	Fukuoka International University		○	○		20110720
148	일본	Fukuoka University				○	20080925
149	일본	Fukuoka Women's University			○		20100318
150	일본	NSG GROUP		○	○	○	20140730
151	일본	Karatsu Seishou High School			○		20080114
152	일본	Kanto International Senior High School				○	20160401
153	일본	Kumamoto Chuo High School				○	20150201
154	일본	Denpa Gakuen				○	20151026
155	일본	Miyata Gakuen (NISHINIHON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				○	20151116
156	중국	Jiangnan University			○		20060116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157	중국	Qufu Normal University	○	○	○	○	20150428
158	중국	Guangdong Construction Vocational Technology Institute			○		20131016
159	중국	Guangdong Baiyun University	○	○	○	○	20141210
160	중국	Guangdong Lingnan Vocational and Technical College	○	○	○	○	20160630
161	중국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		20040611
162	중국	Guangzhou International Economics College			○		20131017
163	중국	GuangZhou City Construction College				○	20151105
164	중국	Zhuhai College of JILIN University	○	○	○		20111209
165	중국	Jinlin Huaqiao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	○	○	○	20150420
166	중국	Nanjing University	○	○	○		20161103
167	중국	Nanjing Vocational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	○	○	20161103
168	중국	Nantong University				○	20150525
169	중국	NanHua College Of Industry And Commerce			○		20101102
170	중국	Ludong Univerisity	○	○	○		20120626
171	중국	Dalian Foreign Languages Institute of Economics &Trade			○		20051209
172	중국	Dalian Nationalities University	○	○	○		20121114
173	중국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	○	○		20051210
174	중국	Mianyang Arts College of SCCM			○		20100823
175	중국	FUDAN University		○	○		20131226
176	중국	Beijing Language & Culture University	○	○	○		19990120
177	중국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	○			20050523
178	중국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20131015
179	중국	SICHU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	○		20131212
180	중국	Chengdu Institute Sichua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	○	○	20141212
181	중국	Shandong Jiaotong University	○	○			20120604
182	중국	Shandong Normal University	○				20120821
183	중국	Shanghai Industry & Commerce Foreign Language College			○		20051220
184	중국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	○		19940704
185	중국	Shanghai Second Polytechnic University	○	○	○	○	20151125
186	중국	Shaoguan University				○	20140709
187	중국	Shenyang Institute of Engineering			○		20051205
188	중국	Anshan Normal University	○	○	○		20121116
189	중국	Yangzhou University				○	20150612
190	중국	Yantai University	○	○			19910719
191	중국	Wenjing College.Yantai University	○	○	○		20121112
192	중국	Eastern Liaoning University	○	○	○	○	20160727
193	중국	Liaocheng University			○	○	20141212
194	중국	Wuxi Nanyang Vocational College			○		20060116
195	중국	Zhejiang Yuexiu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	○	○		20140430
196	중국	Zhejiang Shuren University	○	○	○		20140321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197	중국	Zhejia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20150525
198	중국	Ocean University of China		○			20061011
199	중국	Central South of Forestry and Technology University	○	○			20050525
200	중국	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	○		20131125
201	중국	Minzu University of China		○	○		20131014
202	중국	Tianjin Normal University Jingu College	○	○	○		20140709
203	중국	Tianjin Foreign Studies University	○	○	○		19990305
204	중국	Binhai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TFSU			○		20120205
205	중국	TIANJIN VOCATIONAL INSTITUTE				○	20140711
206	중국	Qingdao Hengx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	20141128
207	중국	TSINGHUA University		○	○		20131125
208	중국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	○		20090909
209	중국	Heilongjiang University		○			20100727
210	중국	Jiangsusheng Rudong Vocational School				○	20150610
211	중국	Nanyang International School				○	20060116
212	중국	Lai Zhou # 1 Senior High School			○	○	20051214
213	중국	Beijing New Bridge Foreign Language Senior High School				○	20131015
214	중국	Beihai Guofa High School				○	20140524
215	중국	Senior high school attached to Shanghai Industry&Commerce Foreign Language College				○	20051217
216	중국	Middle School attached to China Ocean University				○	20120928
217	중국	Qingdao Tourism School				○	20051012
218	중국	Qingdao Commerce School				○	20120928
219	중국	Qingdao Foreign Affairs Service Vocational School				○	20140430
220	중국	Qingdao No.1 High School				○	20120928
221	중국	Qingdao No.9 High School				○	20120927
222	카자흐스탄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	○	○	20080630
223	카자흐스탄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			20090116
224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			20080802
225	카자흐스탄	Kazakh State Women's Teacher Training University		○			20150518
226	카자흐스탄	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Strategic Research(KIMEP)		○			20081125
227	카타르	Qatar University				○	20120229
228	캐나다	Centennial College				○	20160823
229	캐나다	Selkirk College		○			20050621
230	캐나다	Okanagan College		○			20151221
231	캐나다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				20101221
232	코스타리카	University for Peace				○	20160126
233	코스타리카	University of Costa Rica			○		20070703
234	콜롬비아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			20101027
235	타지키스탄	Russian-Tajik Slavonic University				○	20110307

연번	국가명	대학명	교류협정내용				협정 체결일
			2+2	3+1	7+1	기타	
236	태국	Kasetsart University			○		20000818
237	태국	Ramkhamhaeng University				○	19970214
238	태국	Bangkok University	○	○			20090220
239	태국	Srinakharinwirot University	○	○			20040713
240	태국	Assumption University				○	20140708
241	태국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ongkorn University				○	19970220
242	태국	Chiang Mai University				○	19930220
243	태국	Chiang Mai Rajabhat University		○	○	○	20160216
244	터키	Ankara University		○			20061213
245	터키	Hacettepe University		○	○		20130904
246	폴란드	Adam Mickiewicz University		○			20150114
247	폴란드	Opole University			○		19970709
248	프랑스	Universite Jean Moulin Lyon 3		○			20160922
249	프랑스	University Bordeaux Montaigne		○			20160824
250	프랑스	Bretagne Occidentale University				○	20020610
251	프랑스	EMBA-ISUGA University		○			20130718
252	프랑스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		20110322
253	프랑스	Universite Paris Diderot - Paris 7		○			20160607
254	필리핀	Don Honorio Ventura Technological State University			○		20131121
255	필리핀	Tarlac State University			○		20130604
256	필리핀	University of St. La Salle			○		20110713
257	필리핀	University of the Visayas			○		20110712
258	필리핀	University of San Jose Recoletos			○		20141128
259	필리핀	Cebu Doctor's University			○		20110712
260	필리핀	University of the Assumption	○				20090319
261	필리핀	STI WEST NEGROS UNIVERSITY				○	20160912
262	필리핀	University of Perpetual				○	20110715
263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	20150827
264	호주	Deakin University			○		20110203
265	호주	Macquaire University(Access MQ Ltd.)			○	○	20151026
266	호주	The University of Sunshine Coast	○		○		20080827
267	호주	James Cook University, Brisbane				○	20161026
268	호주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				20080318
269	호주	The University of Tasmania	○				20080826
합계		41개국 269개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요람 2016

발행 : 부산외국어대학교

편집 :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

46234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TEL : 509-5000(대) FAX : 509-5005(대)
